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에 대한  
자카르타 선언**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에 대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

**(검토 대상 초안)**

## 목차

두문자어.....	3
서문.....	4
1. 비전 및 목표.....	6
2. 이행을 위한 변화의 주체.....	7
2.1 범정부적.....	7
2.2 범사회적.....	8
3.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애포괄.....	8
3.1 16%라는 수치의 이면.....	9
3.2 현재 소외된 장애인 집단.....	10
4. 본 운영 가이드의 구조.....	11
5. 제안된 조치.....	14
5.1 중요한 조치.....	14
5.1.1 헌법과 인권조약을 통한 권리실현.....	14
5.1.2 다각화 및 개선된 자원 동원.....	14
5.1.3 전략적 예측 및 조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최고정부기관.....	15
5.1.4 장애인 차별과 교차적 차별 철폐를 위한 역량 개발.....	16
5.1.5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	17
5.2 6가지 우선 이행 영역 및 조치.....	18
5.2.1 우선 이행 영역 1: 협약 비준 또는 승인 이후 국내 법률과 CRPD의 조화.....	18
5.2.2 우선 이행 영역 2: 다양성을 갖춘 전 연령대 남녀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23
5.2.3 우선 이행 영역 3: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장애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다양한 필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물리적 접근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28
5.2.4 우선 이행 영역 4: 자원, 기술 혁신 및 인재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개발 촉진.....	34
5.2.5 우선 이행 영역 5: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 장려.....	39
5.2.6 우선 이행 영역 6: 장애 데이터 격차 해소 및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역량 강화.....	50
5.3 모든 우선 이행 영역의 주요 활동 주체 및 파트너.....	55
5.4 기술적 지원 및 운영 가이드 이행 상태 추적.....	56

## 두문자어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SEAN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O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RC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PD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SO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T	장애 평등 교육(Disability Equality Training)
ECE	취학 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ESCAP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CRC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F	기능, 장애 및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IPAA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SME	미소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PD	장애인 단체(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DG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DL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N	국제 연합(United Nations)
UNDP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FPA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CEF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OPS	유엔사업서비스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PRPD	유엔 장애인 권리 파트너십(United Nations Partne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Women	유엔여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PR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VNR	자발적 국별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서문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이후 '지역별 장애인 10년')에 대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는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에 대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자원이다. 본 문서는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의 사회개발국에서 준비했다.

자카르타 선언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의 최종 검토에 관한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 ESCAP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채택했다. 자카르타 선언에서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새로운 지역별 장애인 10년(2023~2032)을 선포했는데, 이는 1993년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온 지역별 장애인 10년의 네 번째 10년이다. 자카르타 선언에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이전 지역별 장애인 10년 중 채택된 인천전략에서 설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Make the Right Real)'<sup>1</sup>이라는 지역별 목표가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했다. 또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는 인천전략,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및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을 향해 나아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 사회 및 환경 맥락에서 지속적인 요인 및 새로 등장하는 요인을 다뤘다.<sup>2</sup>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종합하여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는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 동안 앞서 언급한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포괄적 성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중 6가지 우선 이행 영역에 합의했다.

본 운영 가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포괄적 발전을 달성한다는 비전에 따라 자카르타 선언에 포함된 약속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본 가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포괄 비전을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장애인단체(OPD), 민간단체, 학계, 여러 UN 기관 및 기타 발전 파트너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CSO)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초안 작성 및 협의 과정에 기여한 단체 및 개별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여기에는 2023년 6월에 개최된 전문가 그룹 회의,<sup>3</sup> 11개 UN 기관의 창구,<sup>4</sup>

<sup>1</sup> E/ESCAP/69/13, 붙임 I 및 II.

<sup>2</sup> ESCAP/74/22/Add.1.

<sup>3</sup> 전문가 그룹 회의는 OPD, 학계, UN 기관 및 기타 발전 파트너를 비롯한 CSO와 정부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 역량을 갖춘 기타 이해관계자 총 113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그룹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자 명단은 [www.unescap.org/events/2023/expert-group-meeting-develop-operational-guide-implementation-jakarta-declaration-asian](http://www.unescap.org/events/2023/expert-group-meeting-develop-operational-guide-implementation-jakarta-declaration-asian)을 참조하십시오.

<sup>4</sup> 여기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포함된다.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의 실무그룹 위원<sup>5</sup>과 기타 국제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운영 가이드는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기술적 자원으로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본 운영 가이드는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관한 규범적인 만능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대신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요소, 체계적인 방식 및 역량 발전을 제시한다.

본 운영 가이드는 범사회적 참여와 함께 장애포괄적 발전을 향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조치를 제시한다. 정부가 본 운영 가이드의 주요 사용자이지만 정부 이외에 CSO, OPD,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한계, 유엔 기관 및 기타 발전 파트너를 비롯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광범위한 활동 주체에서 본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

<sup>5</sup> 자세한 내용은 [www.maketherightreal.net/working-group](http://www.maketherightreal.net/working-group)을 참조하십시오.



## 1. 비전 및 목표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이하 '지역별 장애인 10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대한 운영 가이드는 자카르타 선언에 포함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기술적 자원으로 ESCAP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본 운영 가이드는 범사회적 참여와 함께 장애포괄적 발전을 향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조치를 제시한다.

자카르타 선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sup>6</sup> 인천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이하 '베이징 선언 및 행동계획') 및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이행하는 데 있어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발전했다는 점을 인정한다.<sup>7</sup> 또한 6가지 우선 이행 영역에서 집중 조치를 통해 지속되는 문제 및 새로 등장하는 문제의 맥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포괄적 발전을 향상 진전을 가속화할 필요를 강조한다. 본 운영 가이드는 장애포괄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약속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장애포괄을 향한 이행 과정의 가속화에 기여한다.

특히 본 운영 가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음을 가속화하기 위한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자카르타 선언에서 확인한 조치의 6가지 우선 이행 영역을 강조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목표의 이행을 위한 진전
-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SDG의 이행 및 진전 추적에서 장애포괄
- CRPD 및 그 선택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본 운영 가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포괄 비전을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장애인단체(OPD), 민간단체, 학계, 여러 UN 기관 및 기타 발전 파트너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CSO)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ESCAP 사무국에서 작성했다.

본 운영 가이드는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관한 규범적인 만능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대신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요소, 체계적인 방식 및 역량 발전을 제시하는 자원이다.

---

<sup>6</sup> E/ESCAP/69/13, 부임 I 및 II.

<sup>7</sup> ESCAP/74/22/Add.1.

## 2. 이행을 위한 변화의 주체

### 2.1 범정부적

과거 3차에 걸친 지역별 장애인 10년의 경험은 장애를 직접 담당하는 주요 부처가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몰다에서 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국가에서는 동일한 부처에서 CRPD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유엔아동권리협약(CRC) 및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등과 같은 젠더 평등, 아동 권리 및 노인 권리와 관련된 기타 인권 조약 및 틀의 이행 및 보고를 조정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인권, 복지, 웰빙 등과 같은 규모와 범위를 담당하기에는 자원 할당이 부족하다. 예산 및 인적 자원의 할당이 부족하면 필수 의무를 이행하는 주무 부처의 체계적 역량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

모든 부처에서 장애포괄을 이행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각 부처 및 각 부문의 핵심 사업에 필수적인 장애포괄의 보다 폭넓은 국제적 이해를 반영한다. 장애 및 장애인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및 SDG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발전 부문을 포괄하는 7가지 SDG 세부목표와 10가지 연결 지표<sup>8</sup>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는 장애포괄이 단지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부처 및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대신 장애포괄은 다양한 부처 및 부문의 핵심 비즈니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헌법 및 장애 관련 법률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명령을 정의하면 장애포괄에 여러 부처 및 부문의 참여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장애포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모든 수준의 부처 및 정부가 이행 주체로 참여하므로 최고정부기관의 활력 넘치는 새로운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고정부기관이 장애포괄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채택을 옹호하고 권한을 이용해 장애포괄에 관해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조치를 모아 조정해야 한다. 최고정부기관의 리더십 아래 이러한 접근법은 장애포괄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운영 가이드는 여러 정부 주체에서 이행하도록 마련되었다. 최고정부기관의 리더십은 이러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운영을 위해 강조되며, 구체적인 역할 및 조치는 **섹션 5. 제안된 조치, 5.1.3 변화를 주도하는 최고정부기관**에서 요약 제시된다. 관련 정부 기관은 각 우선 이행 영역의 가능한 이행 주체로 제안된다. 각 우선 이행 영역의 관련 정부 기관의 예는 예시적일 뿐이며 완전하지 않다.

---

<sup>8</sup>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의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및 세부목표(<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2023년 8월 22일 접속)에 대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십시오. 지표에 대한 설명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SDG 지표는 공식 통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여부, 장애, 지리적 위치 또는 기타 특성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 2.2 범사회적

장애포괄은 정부를 이외 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부문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민간 부문, 미디어, 학계, 국제 커뮤니티의 다양한 주체가 장애포괄에 관한 각자의 분야에서 파트너십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시민사회 주체 특히, 장애인단체(OPD)는 여러 부문에서 장애인 권리가 발전 의제의 핵심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기후 회복력 및 디지털화 등과 같은 현재 지역별 우선순위가 포함된다. 무엇보다 이는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결정과 여러 부문에서의 장애포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제안된 모든 조치에서 시민사회 주체 특히, OPD의 필수적 역할을 인정한다. 한편, 교차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장애포괄을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리, 젠더 평등, 청년, 노인 및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포용에 관한 시민사회의 조치에서 시너지를 활용 및 구축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특화된 시민사회 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장애 주류화의 범위를 넓히고 교차적 차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부문은 장애포괄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엄청난 미개발 자원을 제공한다. 민간 부문은 장애가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데 유니버설디자인을 채택하고, 조직 문화, 작업장 정책, 마케팅 및 기타 비즈니스 관행을 장애포괄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가치 체인을 통해 장애포괄을 주류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이 더욱 커진 인력 및 비즈니스의 가치에 주목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민간 부문 주체가 자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장애를 해소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뛰어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장려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확인한다.

UN 및 발전 협력 주체는 정치적 의지를 촉진하고, 지역 및 여러 부문 간 합의를 촉진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포괄을 위한 지역 옹호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2023~2032)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특히 유엔 국가 팀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UN 기관 및 국제 발전 파트너의 참여를 강조해 국가 내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우선하는 국가 차원 문제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공동으로 고안한다.

따라서 본 운영 가이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 주체를 위해서도 작성되었다. 참조를 위해 정부 이외에 가능한 활동 주체의 예는 **섹션 5.3 모든 우선 이행 영역의 주요 활동 주체 및 파트너**에서 제시한다.



### 3.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애포괄

#### 3.1 16%라는 수치의 이면

CRPD<sup>9</sup>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인에는 다양한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타인과 동일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신체, 정신, 지적 또는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약 13억 명)가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수치는 7억 5천만 명에 달한다.<sup>11</sup> 다양한 연구와 방법론을 통해 유병률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유병률의 변화가 불분명한 반면, 장애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sup>12</sup>

중요한 점은 장애포괄은 정부에서 장애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sup>13</sup> 일시적인 기능적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노인, 만성 질병을 앓는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비롯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능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수 특히, 치매 환자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 및 서비스가 제공되면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과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와 일시적으로 기능적 문제를 겪는 개인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을 둔 환경 및 서비스(예: 디지털 및 인쇄 정보, 통신, 건축물 및 거리 환경,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고품질 지원 기술 이용으로 인해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장애포괄의 사회 및 경제적 참여의 이점은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 돌봄 파트너<sup>14</sup> 및 조력자에게로 확대된다.

<sup>9</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조를 참조하십시오.

<sup>10</sup> 세계보건기구,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년 제네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추정치는 204개국 및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수록된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중등도 또는 중증 장애와 관련된 질병 및 장애의 연령 및 성별 관련 유병률 추정치가 선택되었다.

<sup>11</sup> 이 추정치는 예측된 글로벌 유병률 및 아시아 태평양의 최신 인구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WHO는 유병률 추정치를 지역별로 제공하지만 WHO의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국가 목록과 ESCAP 지역의 국가 목록에는 편차가 있다.

<sup>12</sup> 세계보건기구,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년 제네바)

<sup>13</sup>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 증명서/카드 발급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장애 증명서/카드 발급을 위한 장애 평가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애 증명서/카드를 발급 받은 개인의 수는 장애 유병률 추정치가 존재하는 국가의 장애 유병률 추정치보다 적다.

<sup>14</sup> '돌봄 파트너'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본 운영 가이드에서 간병인은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과 장애인에게 무료로 돌봄 또는 비공식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둘 다 포함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간병인, 가족,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이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보조기술의 제공 또는 돌봄 파트너를 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돌봄 지원에 대한 필요가 더 쉽게 추가되면 돌봄 파트너는 스스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돌봄 역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낯선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및 기타 장벽이 많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안내 표시, 픽토그램 및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사용되면 낯선 장소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장애포괄은 현재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16%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 3.2 현재 소외된 장애인 집단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2023~2032) 동안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집단이 이행 조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시청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sup>15</sup>, 특정 형태/수준의 장애와 관련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백색증 환자,<sup>16</sup> 중복장애인, 기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sup>17</sup> 연령, 소수자 상태 및 농촌, 외딴 지역 및/또는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타 장애인이 포함된다.

CRPD 6조에서 인정한 장애 여성 및 소녀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성별, 장애, 연령, 민족 및 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 여러 가지 교차적 형태의 차별 상황에 놓인다. 이는 성폭력, 성별로 인한 차별 관행, 교육, 의료, 사법, 정보와 시민 및 정치적 참여 등에 대한 접근 제한을 비롯하여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장애 여성 및 소녀가 직면하는 여러 장애물은 팬데믹 기간, 기타 비상 상황, 분쟁 이후 및 전환 상황을 비롯하여 인도주의-발전의 연계성에서 이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막는다. 장애 여성 및 소녀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조치가 필요하다.

---

<sup>15</sup> 여기에는 종종 간과되는 소아 치매 및 초로기 치매 환자가 포함된다.

<sup>16</sup> 피부색이 더 어둡고 눈동자 색이 진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시아 태평양 사회에서 백색증 환자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며 장애 및 피부색으로 인한 따돌림, 욕설, 차별에 특히 취약하다. 백색증 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albinismalliance.org/en/albinism-information/](http://www.albinismalliance.org/en/albinism-information/)을 참조하십시오.

<sup>17</sup> 총회에서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인정했다(예는 [A/RES/76/176](http://A/RES/76/176) 참조).

## 4. 본 운영 가이드의 구조



###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2023~2032)에 대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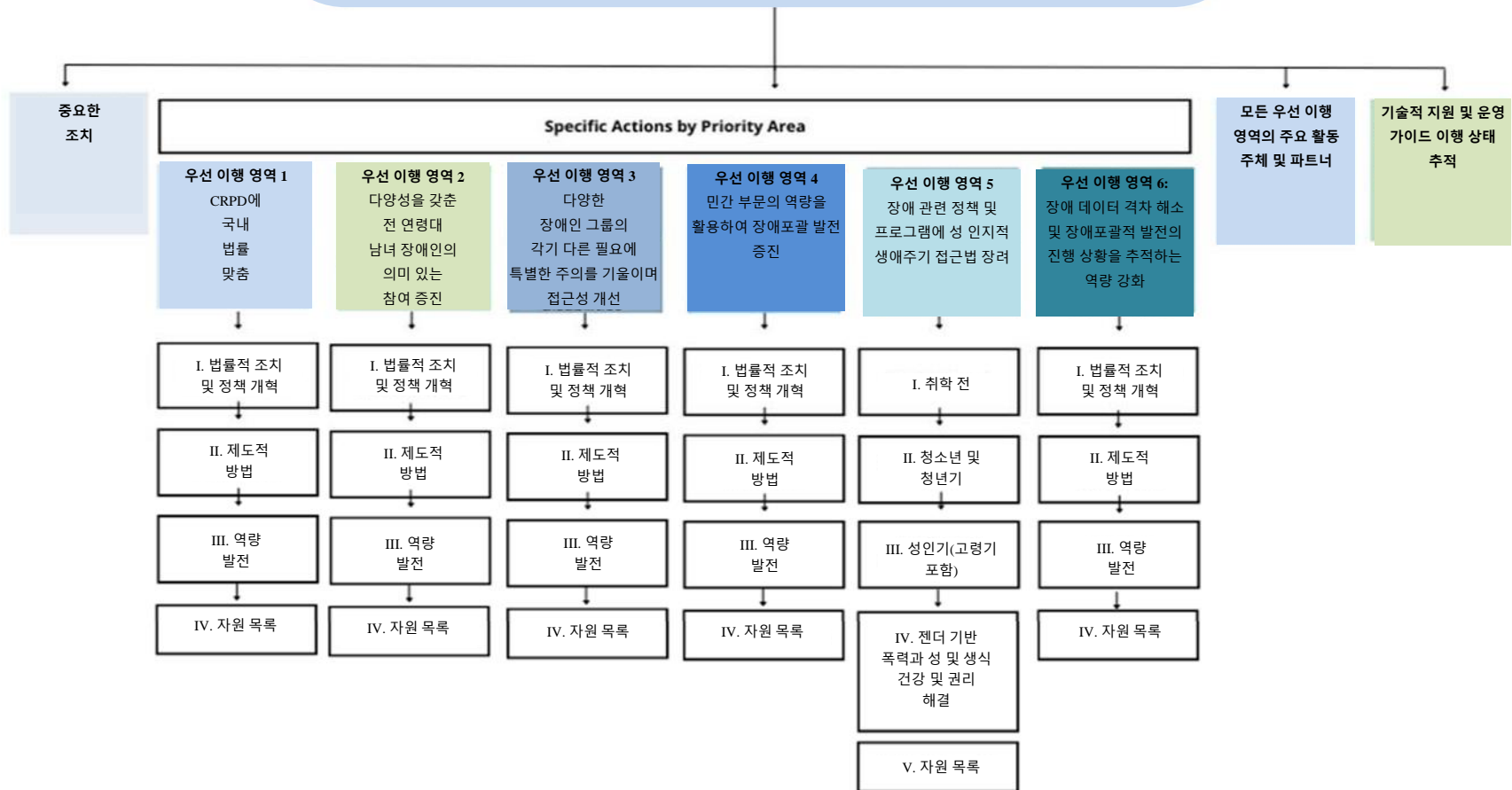


그림 1: 본 운영 가이드의 구조

본 운영 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의 제안된 조치가 있다.

**다음과 관련하여 자카르타 선언의 6가지 모든 우선 이행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 1) 헌법과 인권조약을 통한 권리실현
- 2) 다각화 및 개선된 자원 동원
- 3) 전략적 예측 및 조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최고정부기관
- 4) 장애인 차별과 교차적 차별 철폐를 위한 역량 개발
- 5)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

**자카르타 선언에서 회원국이 인정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음 6가지 우선 이행 영역에 맞춰 묶인 구체적인 조치**

- 1) 협약 비준 또는 승인 이후 국내 법률과 CRPD의 조화
- 2) 다양성을 갖춘 전 연령대 남녀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 3)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장애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다양한 필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물리적 접근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 4) 자원, 기술 혁신 및 인재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개발 촉진
- 5)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을 장려
- 6) 장애 데이터 격차 해소 및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역량 강화

**모든 우선 이행 영역의 주요 활동 주체 및 파트너**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장애포괄적 발전에 대한 범정부 및 범사회적 접근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든 우선 이행 영역에 공통된 다양한 주요 활동 주체와 파트너를 제안한다.

**기술적 지원 및 운영 가이드 이행 상태 추적**

이 섹션에서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기타 UN 기관과 협력하여 ESCAP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조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6가지 주요 이행 영역에 따라 제안된 중요한 조치 및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자카르타 선언 이행의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를 제시한다.

자카르타 선언에서 확인한 6가지 우선 이행 영역은 장애인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력자이다. 이러한 영역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대신 서로 겹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 본 운영 가이드의 사용자는 제시된 중요한 조치 및 구체적인 조치를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본 운영 가이드는 자카르타 선언 이행을 위한 만능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운영 가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관련된 조치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하위 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인정한다.



국가적 상황과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각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저마다 다른 이정표에서 다른 조치에 투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 5. 제안된 조치

### 5.1 중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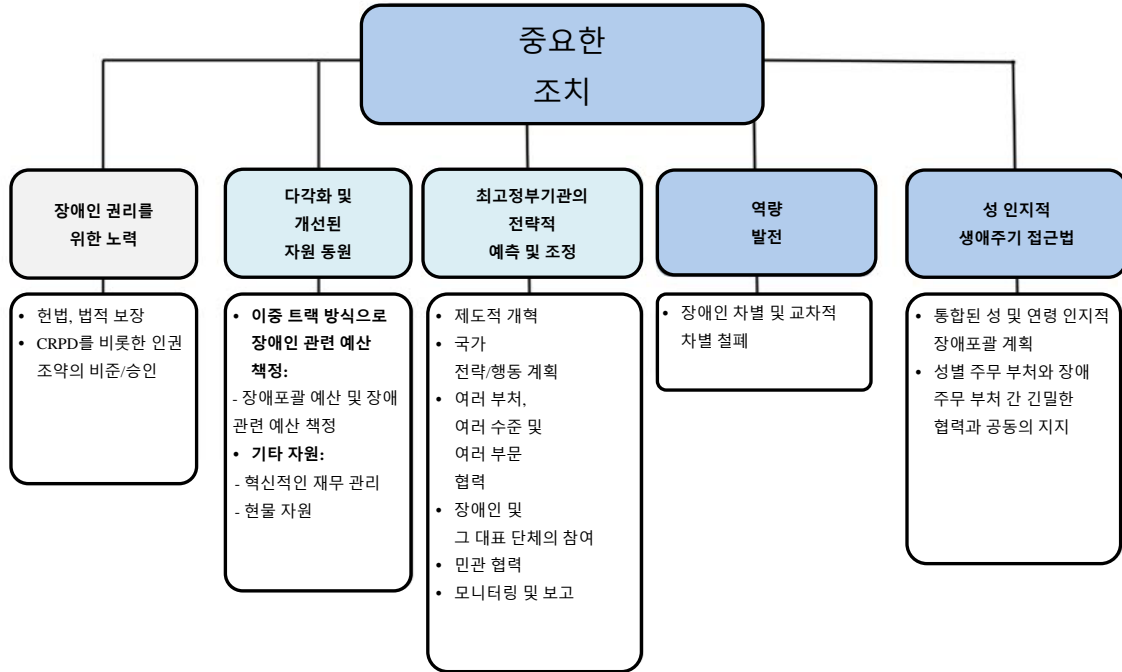


그림 2: 5가지 중요한 조치

#### 5.1.1 헌법과 인권조약을 통한 권리실현

정부는 자카르타 선언을 가급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 운영 가이드를 참조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은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평등 및 비차별과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및 법률
-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권 조약 비준 및 승인

#### 5.1.2 다각화 및 개선된 자원 동원

자카르타 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 다음과 같은 이중 트랙 방식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 책정:
  - (a) 장애포괄적 예산 책정: 주류 예산 계획에 본 운영 가이드에서 언급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포함
  - (b) 장애 관련 예산 책정: 특히 자원 투자가 부족한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은 집중 접근법을 지원하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 관련 예산 항목에 대한 예산 책정 금액 증액
- 다음과 같이 기타 자원 동원:

- (a) 기존 프로그램, 체계 및 프로젝트에 창의적인 장애포괄 수단 살펴보기<sup>18</sup>
- (b) 보조기술의 혁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기술 개발,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확장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등과 같은 혁신적인 재무 관리 체계 살펴보기<sup>19</sup>

### 5.1.3 전략적 예측 및 조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최고정부기관

최고정부기관<sup>20</sup>이 범정부적 접근법에서 장애포괄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도록 다음 조치가 권장된다.

- A. 장애포괄에 관한 부처 및 부문 간 조정 위원회를 통하는 등 모든 부처의 역할을 모아 조정한다.<sup>21</sup>
- B. 국가 발전 계획 프로세스에 장애 문제를 주류화하고, CRPD, SDG, 인천전략,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계획 및 자카르타 선언에 따라 장애포괄에 관한 성 및 문화 인지적 종합 국가 전략 또는 행동 계획을 전개하는 등 장애포괄에 따라 이행 우선순위를 높인다.
- C. 이행 진전으로 이어지는 여러 수준에서 부처 및 부문 간 조정을 보장한다.
- D. 정당 및 정부 둘 다에서 장애인 리더 공동체를 증진 및 확장하여 이들의 역량 및 영향력을 인정 및 활용하여 장애인 권리와 보다 광범위한 발전 의제에서 장애포괄적 변화를 추진한다.
- E.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포괄을 달성한다.
- F. 장애포괄과 관련된 의무 이행을 위해 예산 책정,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지원을 비롯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 이행 기관에 제공한다.
- G. 품질을 보장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며 서비스 접근 불평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을 둘 다 규제한다.
- H. 각 입법 기관의 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준비를 감독한다.

지방 정부 기관<sup>22</sup>에서는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장애포괄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

<sup>18</sup> 예를 들어, Postal Service에서는 수집가를 위해 우표 및 초일봉피를 발행하고 우표 디자인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는 의사결정권자 및 문제 해결자로 묘사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퇴치하고 장애인 중에서 롤 모델을 찾아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수단은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장애인 차별주의자의 행동에 맞서는데 기여할 수 있다.

<sup>19</sup>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예로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는 말리, 나이지리아 및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신체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성과연계채권을 시작하여 이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golab.bsg.ox.ac.uk/knowledge-bank/case-studies/humanitarian-impact-bond/?ref=disability-debrief>를 참조하십시오.

<sup>20</sup>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거버넌스 구조가 회원국에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간에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sup>21</sup> 권장되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운영 가이드 섹션 5.2.2. II를 참조하십시오.

<sup>22</sup> 지방 정부 기관에는 주, 지방자치제, 지구 또는 자치구가 포함될 수 있다.

#### 5.1.4 장애인 차별<sup>23</sup>과 교차적 차별 철폐를 위한 역량 개발

부처 및 부문 간 참여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3개 부분(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반에서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 및 그 대표 단체와 미디어 부문과 협력하여 장애인 권리 실현에 관한 정기 교육 및 후속 조치 계획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 및 실행 계획의 이행은 특히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A. 장애,<sup>24</sup>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및 CRPD 그리고 기타 조약의 의무 및 국가 및 국제 권리 체계와의 교차점을 반영한 사회적 인권 모델<sup>25</sup>
- B. 개인 사례를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돌봄 파트너 및 부모가 직면한 문제
- C. 장애 여성 및 소녀와 성별 편향, <sup>26</sup> 성차별, <sup>27</sup> 연령차별<sup>28</sup> 및 장애인 차별로 인해 소외된 기타 장애인 집단에 대해 중복되는 여러 문제
- D.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지는 신념 체계로서의 장애인 차별
- E. 장애포괄은 모두의 문제이며 더 이상 소외된 일부의 문제가 아님
- F.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성 및 보조기술
- G. 특히, 공공 미디어 및 공공 정보에서 장애포괄 통신<sup>29</sup>

최고정부기관에서는 장애 주무 부처, 국가 미디어 담당 기관 및 OPD의 지원을 받아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2023~2032)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일관된 주요 메시지 및 지역 차원에서 합의한 캠페인 요소를 활용하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개하기 위한 공익 자료의 생산 및 배포를 감독한다.

<sup>23</sup>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 및 배려 받을 가치가 적고 기여 및 참여 능력이 떨어지며 내재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수의 차별적 담론이 점점 더 여론의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은 차별적 표현 및 행동 형태를 계속해서 합법화한다. 장애인 차별은 의식 또는 무의식적일 수 있으며 제도, 시스템 및 더 넓은 사회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un.org/sites/un2.un.org/files/un\\_disability-inclusive\\_communication\\_guidelines.pdf](http://www.un.org/sites/un2.un.org/files/un_disability-inclusive_communication_guidelines.pdf)에서 확인할 수 있는 UN, *UN 장애포괄적 소통 지침(United Nations Disability-Inclusive Communications Guidelines)*(2022년 뉴욕)을 참조하십시오.

<sup>24</sup> 장애 평등 교육(DEE)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이 있다. 예를 들어, Liz Carr, Paul Darke, Kenji Kuno, *장애 평등 교육: 변화를 위한 행동 (Disability equality training: action for change)*, 장애 평등 교육(DEE) 매뉴얼 시리즈, No. 5, (Selangor, MPH Publishing, 2012)가 있다. 자료 참조 위치: [www.un.org/disabilities/documents/egms/2015/Kenji\\_Kuno\\_Change.pdf](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egms/2015/Kenji_Kuno_Change.pdf). NULL/DET 리소스 및 협력 자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ttforum.com](http://www.dettforum.com)을 참조하십시오.

<sup>25</sup> 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및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sup>26</sup> 성별 편향이란 성별에 기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성별에 비해 한 가지 성별을 선호하여 여성 및/또는 여아에 비해 남성 및/또는 남아를 선호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sup>27</sup> 성차별은 태도이다. 이는 한쪽 성별의 개인이 다른 성별의 개인보다 우월하다는 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un.org/womenwatch/osagi/pdf/whatish.pdf#:~:text=SEXISM%20is%20an%20attitude.%20It%20is%20an%20attitude,Or%20a%20woman%20thinks%20that%20men%20are%20chauvinists](http://www.un.org/womenwatch/osagi/pdf/whatish.pdf#:~:text=SEXISM%20is%20an%20attitude.%20It%20is%20an%20attitude,Or%20a%20woman%20thinks%20that%20men%20are%20chauvinists)를 참조하십시오.

<sup>28</sup> 연령차별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나타낸다. 제도적으로 또는 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자신을 향해 스스로 차별하기도 한다. 제도적 연령차별은 연령 때문에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규칙, 사회적 규범, 정책 및 기관의 관행을 의미한다. 연령차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16866](http://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1686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 연령차별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Ageism)(2021년 제네바)를 참조하십시오.

<sup>29</sup> 관련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N, *UN 장애포괄적 소통 지침(United Nations Disability-Inclusive Communications Guidelines)*(2012년 뉴욕) 및 웹 접근성에 관한 ISO 지침([www.accessibility.com/blog/iso-standards-and-accessibility](http://www.accessibility.com/blog/iso-standards-and-accessibility))을 참조하십시오.

위에서 언급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교육 이외에 5.2 6가지 우선 이행 영역 및 조치에서 언급하는 각 우선 이행 영역에서의 진전을 위해서도 집중 역량 발전이 필요하다.

### 5.1.5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전략, 정책 및 조치를 설계할 때 생애주기적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정부 및 사회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소녀가 직면하는 교차적 장애물을 인정해야 하며<sup>30</sup>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 및 이행 전반에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체계적으로 주류화해야 한다.

따라서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 조치가 권장된다.

- A. 장애인에 관한 전략, 정책 또는 프로그램 설계 시 상황 분석의 일부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석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표준화한다.
- B. 장애, 성별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인구 개발, 가족, 아동 및 노인을 위한 국가 조정 기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간의 정기적인 조정 및 공동 계획을 의무화한다.
- C. 장애 주무 부처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관련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태아기부터 취학 전,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을 거쳐 고령기까지 생애 모든 단계에서 필요가 해소되고 권리가 충족되는 정도를 추적한다. 그 결과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기타 장애인이 직면한 교차적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다음에 대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 주무 부처와 성 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주무 부처 간에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A. 성별 및 장애 둘 다의 관점에서 여러 부문의 법률 및 정책 검토
- B. 법률 기관 및 관련 부처에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여러 부문 간 법률 및 정책,<sup>31</sup> 차별 금지와 시행 조치를 명시하도록 조언
- C. 법률 기관 및 관련 부처에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이 성별 및 장애로 인해 직면하는 다면적 문제를 해소하고 법과 정책에서 이들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입법, 법률 및 정책에 수정 및 신규 조항을 도입하도록 조언

<sup>30</sup> UN Women, 'Facts and Figures: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사실과 수치: 장애 여성 및 소녀). [www.unwomen.org/en/what-we-do/women-and-girls-with-disabilities/facts-and-figures](http://www.unwomen.org/en/what-we-do/women-and-girls-with-disabilities/facts-and-figures) 참조

<sup>31</sup> 법률과 정책은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 많은 상황에서 특히, 법 앞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법적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 및 생식 건강과 관련 권리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권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옹호하고 비자발적 불임을 허용하는 법률을 철폐하고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형법 및 민법을 개정하는 개혁이 포함된다.

- D.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에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합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이들이 성별, 장애 및 연령으로 인해 직면하는 다면적 장애물을 해결한다.
- E.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성별 및 장애에 관한 국가 기구를 비롯하여 장애 여성의 대표성과 장애인 단체 내에서 장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한다.
- F. 장애포괄에 관해 제안한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조정 위원회의 지도하에 장애 여성, 부모 및 돌봄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된 단체<sup>32</sup>가 여러 부문 특히, 장애 여성 및 소녀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예: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 및 성별 기반 폭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체계/플랫폼을 확립한다.

## 5.2 6가지 우선 이행 영역 및 조치

### 5.2.1 우선 이행 영역1: 협약 비준 또는 승인 이후 국내 법률과 CRPD의 조화

#### 자카르타 선언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거나 가입되면 국가 및 지역 법률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검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의 정부, 법 집행에 관련된 모든 인력을 교육하고, 국가 정책, 프로그램 및 예산에 정당한 편의 조항을 통합하고, 협약의 이행을 촉진, 보호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적절하게 개발 및 강화하여 협약에 국내 법률을 맞춘다.

#### 설명

CRPD는 장애인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애 관련 국제 법률 수단이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배품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ESCAP 지역은 협약의 시작 및 초안 작성 단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스캅 51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 합계 47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했다. 다른 3개 국가는 서명했으나 이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회원국과 준회원국에서 비준 또는 가입했다. 3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sup>33</sup>

이 주요 이행 영역은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CRPD의 효율적인 조정 및 이행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 법률 및 규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sup>32</sup> 장애인의 돌봄 파트너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장애인의 돌봄 파트너에 관한 많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고려할 때 돌봄 파트너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sup>33</sup> 자세한 내용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Treaty=CRPD](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Treaty=CRPD)를 참조하십시오.



## 주요 조치

2023~203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는 CRPD를 비준 또는 승인한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sup>34</sup>

### I. 법률적 조치 및 정책 개혁

#### A. 소집 권한을 가진 중앙의 최고 정책 기획 기관<sup>35</sup>:

- A1. 각 부처에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채택된, 특히 다음에 관한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 법령, 규제 및 기타 법적 수단(주류화 및 장애 관련과 모든 부문에서)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 (a) 장애인 권리를 부정, 제한 또는 훼손하는 차별적 법적 수단 및 조항<sup>36</sup>
  - (b)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부터 의무 이행자에게 배상하고 의무 이행자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 및 조항
  - (c) 장애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정 조치에 대한 보장이 부재하거나 부적절함
  
- A2. 각 부처에 검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차별적인 기본 법률, 법령, 규제 및 기타 법적 수단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고 신규 법적 수단 및 조항을 도입하고, 다음을 비롯한 필수 요소를 통합하도록 요청한다.
  - (a) CRPD에서 채택한 사회적 모델 및 인권 모델에 부합하는 장애에 관한 법적 정의와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sup>37</sup> 직/간접적 차별과 연령, 성별 및 기타 변수와 장애의 교차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는 장애 기반 차별의 법적 정의<sup>38</sup>
  - (b) 장애인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하고 개별 장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처할 의무를 이행할 각 정부 부처의 책임에 관한 법적 서술
  - (c) 장애인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할 민간 부문의 책임에 관한 법적 서술
  - (d) 국가 법률, 정책 및 규정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및 권리를 폄하하는 표현 삭제
  - (e) 장애인에 대한 비방 및 괴롭힘 금지

<sup>34</sup> 국가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틀로 협약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태국은 이 협약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일부 국가/영토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협약을 비준할 강제성이 없는 태평양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sup>35</sup> 예를 들어, 인도에서 중앙의 최고 정책 기획 기관은 National Institute for Transforming India(NITI Aayog)이며, 이전 명칭은 Planning Commission이었다. 이 기관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적절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협력을 동원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up>36</sup> 한 가지 예는 자살 시도를 범죄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이 전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박탈하는 조항이다.

<sup>37</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조를 참조하십시오.

<sup>38</sup> CRPD/C/GC/6을 참조하십시오.

- (f) 장애인의 법적 능력<sup>39</sup> 인정 및 보호
- (g) 성 인지적이고 장애포괄적 사법 체계에서 접근 가능한 절차 및 정보와 절차적 수용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 및 이행 조치<sup>40</sup>
- (h)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TV, 인터넷 및 기타 방송 채널, 국회 회기 및 기자 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처럼 대중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수어 사용을 제도화
- (i) 탈시설화 및 시설화 방지<sup>41</sup>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 여성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취약한 상황에 놓인 기타 장애인 집단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도적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공동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 기반 지원 제공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 개혁<sup>42</sup>
- (j) 잘 조정된 법적 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 전략 및 행동 계획 수립

**B.** 기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sup>43</sup>에서는 각 부서에 중앙 차원의 정부 기관별로 위에서 언급한 조치에 맞춰 다음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B1.**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각 정부 차원에서 CRPD에 맞춰 법률, 법령, 규정 및 기타 법적 수단을 조정하도록 증진한다.

**B2.** 각 정부 차원에서 기존 법적 수단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거나 신규 법적 수단을 도입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C.** 위에 언급된 조치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별 의사소통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서, 성명, 결정 및 보고서에 관한 일반 논평, 최종 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법적 진화를 고려하도록 한다.

## II. 제도적 방법

<sup>39</sup> CRPD/C/GC/1, para. 12-13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능력에는 권리를 가진 주체 및 법에 따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한 개인을 거래에 참여하고 법적 관계를 맺거나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 능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보조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은 그들의 법적 능력을 존중하는 적절한 접근법이다.

<sup>40</sup> 사법 체계에서 장애포괄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의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제 원칙 및 지침)*(2020 제네바)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참조 위치: [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SR\\_Disability/GoodPractices/Access-to-Justice- EN.pdf](http://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SR_Disability/GoodPractices/Access-to-Justice- EN.pdf).

<sup>41</sup>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입각한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강제 시설화 금지

<sup>42</sup> 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탈시설화에 관한 지침)(2022)를 참조하십시오.

<sup>43</sup> 본 운영 가이드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에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지자체 정부, 지구 정부 또는 자치구 정부가 포함될 수 있다.

- A. 최고정부기관장은 국가 차원에서 다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A1. 적절한 인적 자원으로 CRPD에 맞춰 법률 조정을 감독 및 조율하기 위한 부처 간 창구를 지명하도록 모든 부처에 지시한다.
  - A2. 포괄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사법 개혁 기관, 국가 인권 기구, 특별히 소집된 전문가 기관, 공개 조사 또는 임시 및 대기 중인 입법 위원회를 참여시킨다.
  - A3. 장애인 특히 소외된 장애인 집단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음을 비롯한 작업을 수행한다.
    - (a) 장애인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
    - (b) 법적 구제를 위해 적절한 기구(예: 독립적인 고충 처리 심사 위원회)에 불만 접수
    - (c)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판례법<sup>44</sup> 사례 공유
    - (d) CRPD에 맞춰 국가 및 지방 법률 조정 상태 및 장애에 기반을 둔 차별에 관한 참여 조사 실시
    - (e) CRPD에 맞춘 법률 조정 상태 및 장애에 기반을 둔 차별에 관한 최신 상황 분석을 연 1회 국가 입법 기관에 보고
    - (f)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당사국의 보고서에 관한 일반 논평 및 최종 견해를 해석하고 해당 일반 논평 및 최종 견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조치 모니터링
    - (g)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SDG에 대한 자발적 국별 리뷰(VNR),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sup>45</sup> 및 비준된 기타 인권 조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에서 장애인 권리의 상태 검토 및 보고 통합에 대해 조언 제공
  - A4. 장애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장애인 인권 고충 처리 심사 위원회<sup>46</sup>를 설립한다. 여기서는 법정 소송의 높은 비용, 긴 기간 또는 아예 활용할 수 없는 법적 소송을 피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처리한다.

<sup>44</sup> 판례법이란 판례에 기초한 법을 말하며, 법규 및 규정 등 입법 기관에서 만들거나 규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에서 만든 법률과 다르다. 판례는 법원 또는 유사 기관에서 해결한 판례의 자세한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판결은 특정한 법적 개념 및 상황에 대한 법의 공통 배경 및 해석을 제공하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다.

<sup>45</sup>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는 각 UN 회원국이 4.5년마다 인권에 대한 동료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는 인권위원회 고유의 수단이다. UPR은 각 회원국에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i) 국가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향유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 (ii)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회기 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UN 회원국이 제시하는 권고사항 받기

<sup>46</sup> 심사 위원회는 법원과 다르다. 심사 위원회는 관련 주제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공동체 구성원은 장애인 및 권리 침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인의 조력자일 수 있다. 이들의 판단은 법정 판결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 이는 일반적인 법정을 통해 사법 체계에 접근하는 표준 방법보다 더 인간적이며, 빈곤층에 우호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장애포괄적인 방법이다.

- A5. 장애인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장애인이 사법 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법적 절차 및 법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받은 사법 조력자 또는 중개자의 공급을 지원합니다.
  - A6.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변호사 협회 또는 기타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장애인 특히 저소득 가정 장애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A7. 제안된 새로운 기구(예: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위원회 및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고충 처리 심사 위원회)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자원을 갖춘 기존 기구에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통합한다.<sup>47</sup>
- B.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혁 작업을 실행한다.
  - C. 모든 수준에서 입법 기구 내에 위원회를 설립하여 CRPD에 부합하도록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정책 개혁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

### III. 역량 발전

- A. 장애 주무 부처는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CRPD에 부합하는 사회적 모델 및 인권 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된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위원회, 국가 인권 기관 및 유엔 국가 팀을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자 및 OPD와 협력하여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 B. 장애 및 성별 주무 부처와 OPD의 지원을 받아 법무부에서는 사법부, 경찰 기관 및 기타 사법 체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별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정기적인 집중 교육을 준비한다.
- C. 장애 주무 부처는 제안된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위원회, 국가 인권 기관 및 유엔 국가 팀을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자 및 OPD와 협력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국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교육을 조직한다.
- D. 장애 주무 부처는 제안된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위원회 및 OPD와 협력하여 CRPD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고방식 및 문화적 변화에 관한 공익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한다.

<sup>47</sup> 예를 들어, 국가 인권 기구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전담 자원과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갖춘 장애인 인권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IV. 우선 이행 영역 1에 대한 참조 목록

1.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의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제 원칙 및 지침*)(2020년 제네바), 자료 참조 위치: [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SR\\_Disability/GoodPractices/Access-to-Justice-EN.pdf](http://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SR_Disability/GoodPractices/Access-to-Justice-EN.pdf).
2. 유엔인권,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탈시설화에 관한 지침*), CRPD/C/5(2022년 제네바), 자료 참조 위치: [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http://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 5.2.2 우선 이행 영역2: 다양성을 갖춘 전 연령대 남녀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 자카르타 선언

정당한 편의를 통한 정책, 프로그램 및 정치적 절차에 대한 계획, 구현 및 결정을 내리는 데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까이서 자문을 제공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복수의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의 여성 및 남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인과 그 대표 단체,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구축한다.

##### 설명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 이행 및 의사결정과 정치적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인 권리 실현의 초석이다. 결정을 내릴 권리, 투표권,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이 목표에 내재되어 있다.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에서 이 우선 이행 영역은 특별히 장애와 관련된 영역을 벗어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의사결정,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와 정치적 절차에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 아동, 청년,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주류화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백색증 환자, 중복장애인, 장애 여성 및 소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등 간과되기 쉬운 장애인 집단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다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의미 있는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및 기타 파트너의 행동이 필요하다.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방법 및 플랫폼, 향상된 장애인 및 그 대표 단체, 정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역량이 필요하다.



본 운영 가이드에서 의미 있는 참여란 공공 정책 결정<sup>48</sup>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부 기관 및 기타 파트너는 정기적으로 장애인과 소통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정책적 관심을 끌기 위한 문제 제기
- B.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이 겪는 격차 파악
- C. 모든 부문에서 기후 행동 및 디지털 변환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우선순위를 비롯하여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 공동 기획
- D. 이행 결과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사용자 견해 제공
- E. 새로운 법률 준비 또는 기존 법률 수정을 위한 인사이트에 기여
- F. 공공 부문에서 의사결정 및 기술적 입지 및 역할 차지

선거 주기 전반의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의미 있게 참여할 때 정부 기관 및 기타 파트너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장애인이 다음과 같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A. 장애 관련 정보와 집회 및 투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
- B.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로 포함됨
- C. 장애로 인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동시에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장애인은 다음에 관한 책임을 진다.

- A. 공공 정책 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표적 대상 그룹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기술 습득
- B. 옹호가 필요한 문제에 관한 사실적 지식 및 전문지식 습득
- C. 장애라는 단일 틀을 깨고 다양한 장애 및 부문 간에 강력한 연대 구축
- D. 장애라는 하나의 문제 및 단기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춤
- E. 부문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 연령 및 기타 사회적 포괄 관점을 통합하고 다른 시민 사회 활동 주체와 전략적 연대 구축

공공 정책 의사결정 과정 및 정치적 참여 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장애인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미 있는 참여는 일회성 이벤트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sup>49</sup> 또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그 대표 단체를 자신의 다양한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협박, 괴롭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장애인과의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운영 가이드에서는 2021년에 실시된 장애인 단체의 참여에 관한 제2차 국제장애연맹 글로벌 조사(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Global Survey)<sup>50</sup>의 결과를 인정한다. 해당 결과는 OPD의 관점에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격차와 문제를 나타낸다.

<sup>48</sup> 공공 정책의 정의에 관해 다양한 학계의 의견이 있지만 본 가이드에서는 법률, 규제 조치, 정부 지침, 전략 및 행동 계획과 정책 예를 들어, 경제, 사회 및 외교 문제를 망라한다.

<sup>49</sup> CRPD/C/GC/7, para. 28.

<sup>50</sup> 국제장애연맹, *Not Just Ticking the Disability Box? Meaningful OPD Participation and the Risk of Tokenism, Report of the 2nd IDA Global Survey on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 항목에 표시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OPD 참여 및 형식에 그칠 위험, 장애인 단체의 참여에 관한 제2차 IDA 글로벌 조사)(Geneva, 2022).

이 섹션에서 제안하는 조치는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내 입법 체계, 제도적 장치, 전제 조건(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역량 및 자원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의미 있는 참여'라는 용어는 '간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및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로 바뀌어서 표현할 수 있다.<sup>51</sup>

## 주요 조치

2023~203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I. 법률적 조치 및 정책 개혁

A. 모든 수준의 입법 기관은 문제가 특별히 장애인과 관련이 있든 상관없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다음 조치를 비롯하여 공공 정책 결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의무화한다.

A1. 다음 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양한 장애인 집단<sup>52</sup>(사법, 행정, 입법 기관,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정책 조정 및 의사결정 기구,<sup>53</sup> 공무원 및 자문 위원(전문가)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권익 보호 기구 내)
- (b) 장애 여성(사법, 행정, 입법 기관,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정책 조정 및 의사결정 기구, 특히 성 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기구의 공무원 및 자문 위원(전문가)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권익 보호 기구 내)

A2. 장애인의 투표권<sup>55</sup>, 선출될 권리 및 공직을 맡을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적 장벽 특히,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추가 장벽<sup>54</sup>에 직면한 기타 장애인 집단의 정치적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없앤다.

### II. 제도적 방법

<sup>51</sup> CRPD/C/GC/7, para. 28.

<sup>52</sup> 이 용어는 장애인 간의 큰 이질성을 나타낸다. 장애인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복장애인, 광범위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장애인 중 특정 집단은 안고 살아가는 장애의 형태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장애 여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장애 아동, 청년 및 노인과 시골, 외딴 지역에 거주하거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장애인, 장애 원주민 등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외된다. 또한 정부는 모든 부문에서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된 장애인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sup>53</sup> 이는 교육, 건강, 금융, 도시 개발, 재해 위험 감소, 기후 행동 및 공중 보건 비상 대응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부처의 의사결정 방법을 나타낸다.

<sup>54</sup> 추가 장벽은 사고방식,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소통 및 제도적 장벽과 같은 광범위한 장벽을 말하며, 다른 장애인 집단과 비교하여 이들이 투표할 수 없거나 이들에게 투표가 허용되면 안 된다고 가정한다.

<sup>55</sup> 선거 과정은 예를 들어, 보조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을 촉진하고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후견인법을 철폐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SCAP, *Harmonization of national laws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verview of trends in Asia and the Pacific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국가 법률 조정: 아시아 및 태평양 동향 개요*(2022년 방콕) 및 유엔개발계획,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정치 참여)*(2021년 뉴욕)를 참조하십시오.

- A. 최고정부기관장은 여러 부문 전반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에 관한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며, 이 위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1. 회의를 주재하는 최고정부기관장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운영된다.
  - A2.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조치를 동원, 조정 및 모니터링한다.
  - A3. 풀타임으로 위원회를 위해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 중 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 A4. 자신에 관한 정책 기획,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에 관한 공동 기획 및 의사결정 시 장애 여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장애 아동<sup>56</sup> 및 그 부모/후견인, 장애 노인을 비롯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외된 장애인 집단과의 협의를 보장하고 이에 대해 조언한다.
  - A5. 다양한 장애인 집단이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편의 조치를 마련해 둔다.
- B. 각 부처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자원을 갖춘 부처 내 장애 포괄 조정 기구를 설립/강화한다.
  - B1. 각 부처의 장이 의장을 맡는다.
  - B2. 부처 내 모든 부서에서 장애포괄 조치를 동원, 조정 및 모니터링한다.
  - B3. 장애포괄에 관한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조정 위원회에서 해당 부처를 대표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의견 형성 및 조치에 기여한다.
- C. 기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은 각 수준에서 부서의 장과 협력하여 위에서 언급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한다.
- D.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다음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sup>57</sup> 및 투표(우편 및 대면 방식)에서 장애포괄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sup>58</sup>

<sup>56</sup> 아동권리협약, 13조를 참조하십시오.

<sup>57</sup> 해당 정보 및 자료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 및 언어로 예를 들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 및 수어 형태로 제작되어 배포해야 한다.

<sup>58</sup> 예를 들어, 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보조자가 투표소에 동반하도록 허용하고, Easy Read 투표 지침을 제공하며, 투표소에 '조용한 방/공간'을 마련하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E. 선거관리위원회는 캠페인 자료 및 집회의 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sup>59</sup>
- F. 정당은 선언문에서 장애포괄을 강화하고, CRPD에 맞춰 장애인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 및 캠페인 지지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G. 모든 수준에서 정부 기관은 장애인이 공공 정책 결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다.

### III. 역량 발전

- A. 장애 주무 부처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해 'What, Why and How'(무엇을, 왜, 어떻게)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입안자, 사법부 및 경찰 관련 인력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서 인식을 제고한다.
- B. 장애 주무 부처(및 모든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OPD와 협력하여 장애인 차별주의자의 행동에 대응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의 역량을 강화한다.
- C. 장애 주무 부처(및 모든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발전을 제공한다.
- D. 장애 주무 부처(및 모든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OPD가 공공 정책 결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책정 및 현물 자원을 통해 역량 발전 프로그램을 조정 및 제공한다.
- E. 장애 주무 부처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 및 기타 소외 집단을 비롯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가치 있는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정한다.

### IV. 우선 이행 영역 2에 대한 참조 목록

1. 국제장애연맹, *Not Just Ticking the Disability Box? Meaningful OPD Participation and the Risk of Tokenism, Report of the 2nd IDA Global Survey on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 항목에 표시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OPD 참여 및 형식에 그칠 위험, 장애인 단체의 참여에 관한 제2차 IDA 글로벌 조사)*(Geneva, 2022). 자료 참조 위치: [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blog/%E2%80%9Cnot-just-ticking-disability-box-meaningful-opd-participation-and-risk-tokenism%E2%80%9D](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blog/%E2%80%9Cnot-just-ticking-disability-box-meaningful-opd-participation-and-risk-tokenism%E2%80%9D)

<sup>59</sup>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 후보자 및 선거 운동 연설이 공익 광고로 방송되는 기타 모든 후보자의 경우 수어 해석을 제공한다.

2. 유엔개발계획,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정치 참여)(2021년 뉴욕). 자료 참조 위치: [www.undp.org/publications/political-participation-persons-intellectual-or- psychosocial-disabilities](http://www.undp.org/publications/political-participation-persons-intellectual-or- psychosocial-disabilities)

### 5.2.3 우선 이행 영역3: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장애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다양한 필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물리적 접근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자카르타 선언

복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장애노인의 뚜렷한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에서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 통신(정보 및 통신 기술 및 시스템 포함),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재난 위험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와 관련된 필수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최신 국제 접근성 표준 및 지침에 따라 국가 표준 및 지침을 개발하여 보편적으로 설계된 물품, 서비스, 장비 및 설비 구축을 촉진한다.

#### 설명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을 비롯하여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지식, 정보 및 통신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원칙<sup>60</sup> 및 보조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광범위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서비스, 제품 및 정보를 디자인하는 접근법이다.<sup>61</sup> 이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자가 정보, 시설, 서비스 및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재정립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 농촌 및 외딴 지역의 접근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사용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한다.

보조기술은 보조 제품과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용어이다.<sup>62</sup> 보조 제품은 휠체어, 안경, 보청기, 인공기관, 보조기, 보행 보조기 또는 배변 패드 등과 같은 물리적 제품일 수 있다. 또한 보조 제품은 이동식 경사로 또는 난간 손잡이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통신 및 시간 관리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도 보조 제품이 될 수 있다. 보조기술은 인지, 의사소통, 청력, 이동성, 자기 관리 및 시력과 관련해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유니버설디자인 및 보조기술이 유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sup>60</sup> Centre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아일랜드), *The 7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www.https://universaldesign.ie/what-is-universal-design/the-7-principles/#p2](http://www.https://universaldesign.ie/what-is-universal-design/the-7-principles/#p2)).

<sup>61</sup>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 사용자에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이동성, 정보 습득, 사람 및 의사소통 이해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sup>62</sup>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아동기금 *Global report on assistive technology*(보조기술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22년 제네바).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 필요할 때 균형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 환경을 적절하게 수정 및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3</sup>

디지털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이다.<sup>64</sup> 장애인에게 디지털화는 기회이자 문제이다. 장애의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 교육 및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원격 근무 옵션을 포함하여 더 많은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고, 금융 비즈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건강 상담을 받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학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 대한 현재의 장벽과 부족한 연결성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필수 서비스 및 콘텐츠에서 많은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디지털 환경을 탐색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학습, 업무, 통신 및 레저 환경에서 접근성을 운용하기 위해 이 우선 이행 영역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접근성 표준 준수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접근성에 관한 권리 기반 차별 금지 접근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는 공공 조달 부분에서 민관 협력과<sup>65</sup>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높이기가 포함된다.

## 주요 조치

2023~2032년 각국 정부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한다.

### I. 법률적 조치 및 정책 개혁

A. 모든 수준의 입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접근성에 관한 법적 조치를 제정한다.

- A1. 다음 항목에 대한 접근 거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을 거부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을 금지한다.
  - (a) 물리적 환경
  - (b)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을 비롯하여 지식, 정보, 소통 및 서비스
  - (c) 교통
  - (d) 보조기술
- A2.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소유/제공하든 상관없이 대중에게 공개된 물리적 환경, 시설, 거리 환경, 대중교통, 상품, 정보, 통신, 제품 및 서비스

<sup>63</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조를 참조하십시오.

<sup>64</sup> 디지털 환경의 각 하위 범주의 예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 온라인 텍스트, 시각 및 오디오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뱅킹 서비스, 전자정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있다.

<sup>65</sup> 공공 조달은 정부 부서 또는 지방 정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작업물,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디지털 환경의 것도 포함)<sup>66</sup>를 목표로 삼는다.

- A3. 신규 및 기존 인프라와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한다.
- A4.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의 적용을 요구하고 접근성을 얻기 위한 보완적 필수 수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보조기술의 경제적인 이용을 보장한다.
- B. 국가 표준 기관은 각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조사 기관 및 OPD의 자문을 받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B1. 최근의 국제 접근성 표준 및 지침에 따라<sup>67</sup>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건물, 시설, 인프라, 대중교통 시스템, 정보 및 통신 기술, 디지털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해당 표준 및 지침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국가 표준 및 지침은 접근성에서 성별 격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B2. 위에서 언급한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한다.
  - B3. 정기적으로 국가 표준 및 지침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 C. 건설/인프라 개발/공공 사업/도시 업무 담당 부처는 건물, 시설, 기반 시설, 거리 환경 및 대중교통 시스템 건설에 대한 공식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접근성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 D. 전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접근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또는 공급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입찰을 요구하는 장애포괄적 공공 조달 정책을 개발하여 채택 및 구현한다.
- E. 보조기술, (국제 및 국내) 무역, 산업 개발,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및 정보통신기술 담당 부처에서는 WHO-GATE 5P Framework<sup>68</sup>에 따라 특히 다음 조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인 고품질 보조기술의 지속 가능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sup>66</sup> 이는 재해 위험 및 공공 보건 비상 사태와 관련된 필수 정보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도시, 시골 및 외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나타낸다. 모든 서비스 정보는 시청각 형태 및 Easy Read 형태로 국가/지역 수어 해석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sup>67</sup> 디지털 및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지침의 예는 섹션 5.2.3, IV를 참조하십시오. 우선 이행 영역 3에 대한 참조 목록.

<sup>68</sup> 세계보건기구, '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GATE)', 자료 참조 위치: [www.who.int/initiatives/global-cooperation-on-assistive-technology-\(gate\)](http://www.who.int/initiatives/global-cooperation-on-assistive-technology-(gate)).

- E1.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Rapid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sup>69</sup>을 사용하여 보조기술에 대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충족된 필요 및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평가한다.
  - E2. 가격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기술의 공유 및 채택과 보조 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 E3. 보조기구의 이익 마진을 제한한다.
  - E4. 보조 장치 및 예비 부품에 대한 관세 및 과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 E5.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E6. 보조기구에 대한 현지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인다.
- F.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 및 조약 비준 담당 부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및/또는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협력한다.<sup>70</sup>

## II. 제도적 방법

- A. 다음과 같은 기능 및 목적을 갖는 부처간 접근성 위원회<sup>71</sup>를 설립한다.
  - A1. 최고정부기관의 장애에 직접 보고하는 법정 기관이다.
  - A2. 장애 여성 대표 및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대표 및 관련 부처의 고위 대표를 포함한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한다.
  - A3. 모든 수준에서 접근성 법률, 표준 및 지침의 이행을 추구한다.
  - A4. 디지털화, 기후 행동, 도시/도시/인간 정착 계획, 재난 위험 감소 및 공공 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성에 관한 법률, 정책 및 규정의 초안 작성 및 수정을 위한 기술적 의견을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sup>69</sup> 세계보건기구. *Rapid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rATA)* (2021년 제네바), 자료 참조 위치: [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HP-HPS-ATM-2021.1](http://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HP-HPS-ATM-2021.1).

<sup>70</sup>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27일에 채택되었으며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자료 참조 위치: [www.wipo.int/marrakesh\\_treaty/en/](http://www.wipo.int/marrakesh_treaty/en/). 이 조약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서의 생산과 국제적 이전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가 관리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기존 저작권법에 대한 제약 및 예외를 확립하여 이 조약을 관리한다.

<sup>71</sup> 단기간에 부처 간 접근성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기존의 기구를 조정하여 동일한 기능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A5. 접근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도구, 모범사례, 입법 조치, 연구 조사 및 전문가 명단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접근성 자원 허브의 역할을 한다.
- A6.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 인프라, 시설, 대중교통, 디지털 환경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감사 실시에 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 B. 모든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최신 국제 웹 접근성 지침 및 기술 표준에 따라 정부 웹사이트의 완전한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C. 모든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연간 예산을 책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성의 다양한 차원 이외에 다음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 C1. 유니버설디자인 원칙과 접근성 지침 및 표준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 C2. 접근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정보<sup>72</sup>
- D. 재무부 및 관련 부처 내 예산국에서는 일반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정부기관, 학교, 병원, 고용 서비스 센터 및 금융 서비스 기관 등과 같은 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여 고객에게 접근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은 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 III. 역량 발전

- A. 국가 표준 기관은 관련 부처, 국가 교육 기관, 대학 및 접근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OPD와 협력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 공무원에게 국가의 접근성 표준 및 지침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성 조치 및 시설에 이러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B. 모든 미디어 기관에 관한 권한을 가진 부처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장애포괄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지침의 이행에 대해 매스컴 및 실무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sup>73</sup>
- C.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도시 계획, 건축, 건설, 산업 디자인 및 관리, 엔지니어링, 정보 통신 기술, 공공 행정 및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에

<sup>72</sup> 공개 정보를 Easy Read 형식 및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공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중과 훨씬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www.accessibility.com/blog/what-is-plain-language-and-why-does-it-matter](http://www.accessibility.com/blog/what-is-plain-language-and-why-does-it-matter) 를 참조하십시오.

<sup>73</sup>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에서 장애포괄적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했다. 이러한 리소스 중 하나가 UN 장애포괄적 소통 지침(United Nations Disability-Inclusive Communications Guidelines)이다(이 지침에 접근하려면 섹션 5.2.3, IV. 우선 이행 영역 3에 대한 참조 목록 참조). 해당 지침은 UN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위해 작성되긴 했지만 포괄적 소통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접근성 표준 및 지침을 통합하도록 공공대학, 교육기관 및 전문협회에 요구한다.

- D. 장애 주무 부처는 OPD 및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 여성, 소녀 및 노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환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준비한다.<sup>74</sup>
- E. 장애 주무 부처 및 OPD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일반 대중, 학교, 병원, 고용 서비스 센터 및 금융 서비스 기관을 직접 응대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지원 제공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 IV. 우선 이행 영역 3에 대한 참조 목록

1. Accessibility.com, 'What is Plain Language and Why Does it Matter?(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표현이 중요한 이유)' 참조 자료 위치: [www.accessibility.com/blog/what-is-plain-language-and-why-does-it-matter](http://www.accessibility.com/blog/what-is-plain-language-and-why-does-it-matter)
2. Centre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아일랜드), 'The 7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 참조 자료 위치: [www.universaldesign.ie/what-is-universal-design/the-7-principles/#p2](http://www.universaldesign.ie/what-is-universal-design/the-7-principles/#p2)
3.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지침:
  - Accessibility Checker '섹션 508'. 참조 자료 위치: [www.accessibilitychecker.org/guides/section-508/](http://www.accessibilitychecker.org/guides/section-508/)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2.  
참조 자료 위치: [www.w3.org/TR/WCAG22/](http://www.w3.org/TR/WCAG22/)
  -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참조 자료 위치: [validator.w3.org/](http://validator.w3.org/)
4.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에 관한 지침:
  - 싱가포르 정부, *Code on Accessi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에 관한 규정)*(2019년 싱가포르). 참조 자료 위치: [www1.bca.gov.sg/regulatory-info/building-control/universal-design-and-friendly-buildings/code-on-accessibility-in-the-built-environment](http://www1.bca.gov.sg/regulatory-info/building-control/universal-design-and-friendly-buildings/code-on-accessibility-in-the-built-environment)
  - 국제표준화기구, 'ISO/TR 22411:2021 Ergonomics data for use in the application of ISO/IEC Guide 71(ISO/IEC Guide 71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인체공학 데이터)', 2011. 참조 자료 위치: [www.iso.org/standard/78847.html](http://www.iso.org/standard/78847.html)
  - 국제표준화기구, 'ISO 21542:2021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빌딩 건축 -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및 사용성)' 2021. 참조 자료 위치: [www.iso.org/standard/71860.html](http://www.iso.org/standard/71860.html)
  -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Guide 71:2014 Guide for addressing accessibility in standards(표준의 접근성 문제 해결 가이드)' 2014. 참조 자료 위치: [www.iso.org/standard/57385.html](http://www.iso.org/standard/57385.html)
  - 미국 정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빌딩 및 시설에 관한 접근성 지침, 건축물장애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ABA) 접근성 지침*, 2004. 참조 자료 위치:

<sup>74</sup> 증거에 따르면 장애 여성, 소녀 및 노인은 디지털 변환에서 더욱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4/07/23/04-16025/americans-with-disabilities-act-ada-accessibility-guidelines-for-buildings-and-facilities](http://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4/07/23/04-16025/americans-with-disabilities-act-ada-accessibility-guidelines-for-buildings-and-facilities)

5. UN, *United Nations Disability-Inclusive Communications Guidelines*(UN 장애포괄적 소통 지침)(2022년 뉴욕). 참조 자료 위치: [www.un.org/sites/un2.un.org/files/un\\_disability-inclusive\\_communication\\_guidelines.pdf](http://www.un.org/sites/un2.un.org/files/un_disability-inclusive_communication_guidelines.pdf)
6. 세계보건기구. *Rapid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rATA)*(2021년 제네바). 참조 자료 위치: [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HP-HPS-ATM-2021.1](http://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HP-HPS-ATM-2021.1)

#### 5.2.4 우선 이행 영역 4: 자원, 기술 혁신 및 인재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개발 촉진

##### 자카르타 선언

민간 기업이 인력, 조직, 제품, 서비스, 시장 활동 및 공급망에서 장애포괄을 주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배포하고 특히 소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산업 지침 및 프로토콜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 고정관념 및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거하여 공공 조달 인프라,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범용 디자인 및 접근성 조치의 적용을 촉진하고 장애포괄적 공공 조달 정책을 채택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 기술 혁신 및 재능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역량을 자극한다.

##### 설명

이 우선순위 영역에서는 민간 부문에 가치 사슬 전반에서 장애포괄을 향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상당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sup>75</sup> 민간 부문은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 자원, 기술 혁신 및 인재를 주도하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장애포괄을 증진할 수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등과 같은 개념이 점점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Valuable 500<sup>76</sup> 및 장애균등지수<sup>77</sup>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장애포괄을 비즈니스 활동에서 주류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이행하고 있다.

장애인은 잠재적으로 규모가 크고 아직 미개척 소비자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러한 인구의 가처분 소득은 1조 9천억 달러이다.

<sup>75</sup> 개인 소유가 중요한 요소이고, 시장과 경쟁이 생산을 주도하고, 민간 주도 및 위험 감수가 경제 활동에 활기를 가져오는 시장 기반 경제에서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인 민간 부문은 공식 또는 비공식 경제에서 다양한 시장 활동 주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 국내 대기업, 미소중소기업(MSME), 사회적 기업,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비즈니스 중개기관, 상호 조직, 국영 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개발계획, *UNDP's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Partnership Strategy (2018-2022): Making Markets Work for the SDGs(UNDP의 민간 부문 발전 및 파트너십 전략(2018-2022): 시장이SDG 달성을 위해 작용하도록 만들기)*(2020년 뉴욕)를 참조하십시오.

<sup>76</sup> Valuable 500은 장애포괄을 위해 함께 혁신하는 500명의 CEO와 그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집단이다. 회원들은 장애포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기화된 집단행동을 통해 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thevaluable500.com](http://www.thevaluable500.com)을 참조하십시오.

<sup>77</sup> Disability: IN 및 미국장애인협회에서 시작한 장애균등지수는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에 장애포괄을 위한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조치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벤치마크 도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disabilityin.org/what-we-do/disability-equality-index/](http://www.disabilityin.org/what-we-do/disability-equality-index/)를 참조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돌봄 파트너 및 장애포괄적 상품 및 서비스를 우선하는 조력자를 고려했을 때 가치분 소득은 13조 달러로 증가한다.<sup>78</sup> 장애포괄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은 점점 더 다양한 활동 주체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sup>79</sup> 포괄적 시장을 만들려면 장애포괄적 제품, 서비스 및 시장 활동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 디자이너, 기술자, 생산자 및 가치 체인의 기타 역할로서 장애인 인재의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우선 이행 영역에서 제안된 조치는 민간 부문에서 장애포괄의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둔다.

- A.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 B. 장애인을 위한 제품<sup>80</sup> 및 서비스<sup>81</sup>의 품질, 관련성 및 디자인적 매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는 수익을 창출한다.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의 5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82</sup>

- 1) 장애포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기업 정책 또는 전략이 존재한다.
- 2) 전체 비즈니스 가치 체인을 통해 장애인이 예를 들어 CEO/고위 관리자, 기술 전문가, 도급업자, 컨설턴트, 공급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3)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주류를 이룬다.
- 4) 민간 기업이 다음과 같은 역할로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조달 관행
  - (a) 정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입찰자(공공 조달)
  - (b)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입찰을 요청하는 입찰 요청인(민간 조달)
- 5) 접근 가능한 근무 시설, 정보 인프라, 디지털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장애포괄적 마케팅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하는 장애포괄적 작업 환경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면 장애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가 개선된다. 이러한 참여는 주류 제품 및 서비스와 다양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sup>83</sup>

<sup>78</sup> Return on Disability Group, 'Insights'. 참조 자료 위치: [www.rod-group.com/insights](http://www.rod-group.com/insights).

<sup>79</sup> 예를 들어, UNOPS에서 주도하는 보조기술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ATscale은 장애포괄에 1달러를 투자하면 9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ATscale, *The Case for Investing in Assistive Technology*(*보조기술에 대한 투자 사례*)(2020년 제네바)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자료 위치: [www.atscalepartnership.org/investment-case](http://www.atscalepartnership.org/investment-case).

<sup>80</sup> 예를 들어 스웨덴 민간 기업인 Permobil에서는 지체장애인이 기존 휠체어를 타고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및 휠체어 시트를 포함한 보조기술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한다. 이 업체는 보조기술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높은 기술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permobil.com/en-us](http://www.permobil.com/en-us)를 참조하십시오.

<sup>81</sup> 예를 들어, Huawei는 청각장애인의 소통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수여하는 아바타를 생산한다. 2022년 업데이트된 Huawei의 수여하는 아바타는 중국어로 입력된 텍스트를 바로 중국어 표준 수어로 변환할 수 있다. 중국어 표준 수어 해석 서비스는 일상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만 개가 넘는 수어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Huawei는 인공지능 기반 수어 해석 서비스(SignPal Kit)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ESCAP, *Sign Language, What Is It?*(*수어란 무엇인가?*)(2023년 방콕)를 참조하십시오.

<sup>82</sup> ESCAP, *Disability at a Glance: Disability-inclusive Business*(*한눈에 보는 장애: 장애포괄적 비즈니스*)(가제)(2023년 방콕)(작성 중).

<sup>83</sup>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Global report on assistive technology*(*보조기술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22년 제네바).

그러한 제품 및 서비스는 장애인의 돌봄 파트너(나이든 여성을 비롯하여 주로 여성 및 소녀임)의 육체 및 정신적 부담을 더는 데 유용하다.

## 주요 조치

2023~2032년 각국 정부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 법률적 조치 및 정책 개혁

- A. 입법 기관은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력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포괄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 내에 접근성 관련 조항 및 접근성 표준을 통합하도록 고용,<sup>84</sup> 노동 및 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검토, 수정 또는 개발한다.
- B. 모든 관련 부처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에서는 입찰 과정에 우선 계약<sup>85</sup> 및/또는 접근성 규정 준수 통합을 통해 장애포괄적 공공 조달 정책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과정의 이행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C. 상거래 및 산업 담당 부처와 모든 수준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관행을 보여주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sup>86</sup>를 제공한다.
  - C1. 장애포괄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sup>87</sup> 및 조직적 전략
  - C2. 모든 직무 범주 특히, 기술 및 전문 직무와 리더십 및 의사결정 직급에 장애인 채용의 발전
  - C3. 일반 대중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설계, 생산, 마케팅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준수
  - C4. 장애포괄적 민간 조달 관행
  - C5.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부 통신 방식 및 동료의 태도 등 모든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고 장애포괄적인 근무 환경 조성
- D. 상거래 및 산업 담당 부처와 모든 수준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ESG, DEI, 영업권 및 인권에 관한 정책 및 규정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

<sup>84</sup> 여기에는 채용, 인턴 기회,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및 경력 발전이 포함될 수 있다.

<sup>85</sup> 우선 계약은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해 접근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접근 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 장애포괄을 위한 경영진 차원의 정책 노력을 통해 장애포괄을 증진하는 기업과 맺을 수 있다.

<sup>86</sup> 인센티브는 일자리 할당량, 세금 감면, 재정 보조금 및 우선 계약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up>87</sup> 장애포괄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와 직원의 인식 변화, 채용, 교육, 촉진 및 갈등 해소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에서 보여주는 경영진의 노력(예: 장애인 직원과의 내부 협의, 채용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장애인과 외부 협의)

- E. 미디어, 방송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처는 상거래, 산업 담당 부처 및 마케팅/광고 협회와 협력하여 인쇄, TV, 소셜 미디어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지침 및 규약의 개발을 촉진하여 장애포괄을 증진하고 장애 관련 차별, 장애인으로 낙인찍기,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 및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제거한다.
- F. 고등교육, 과학, 기술, 상거래, 산업 담당 부처는 장애포괄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십 정책 틀 및 시설을 개발, 지원 및 이행하는 데 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 G. 지방 정부는 장애인 기업가 및 비즈니스 소유자의 금융 서비스 및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가능한 경우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기존의 소액 대출 및 금융 서비스에 장애 여성을 위한 맞춤 지원을 통합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II. 제도적 방법

- A.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에서는 장애포괄적 공공 조달을 이행할 때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 및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새로운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책 및 업무 계획에 통합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 B. 전국 및 지방 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 협회는 다음을 수행할 때 장애인 권리 및 포괄 분야 전문가인 장애인, OPD 및 장애포괄에 관한 정부 창구와 협력한다.
  - B1.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및 철폐,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및 기타 소외된 장애인 집단이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관한 산업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행, 시행 및 모니터링한다.
  - B2. 장애포괄적 민간 조달 시행 시 필요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고 채택을 권장한다.
  - B3. 제품 및 서비스의 공동 기획, 연구 개발에 관해 장애인과 협의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 B4.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식 및 모범사례를 공유 및 교환하고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정부 및 OPD와 대화하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중심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고용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sup>88</sup>

### III. 역량 발전

A. 장애 주무 부처는 상거래, 산업 발전 담당 부처, 민간 기업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협회, OPD와 협력하고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분야의 국제 및 지역 선도 기관과 소통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A1. 다음 내용을 통합하는 장애포괄적 비즈니스<sup>89</sup>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조력자 팀을 구성한다.

- (a) 위의 '설명'에서 언급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의 5가지 주요 요소
- (b) 장애포괄적 비즈니스는 모두에게 이익이 됨
- (c)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적용 방법

A2. 다음 조직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a) 수익성이 큰 기업
- (b)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
- (c)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포함)
- (d) 무역 협회, 상공회의소 및/또는 산업회의소
- (e) 미디어 대행사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A3. 개별 기업 및 전체 부문에서 긍정적 문화 및 행동 변화를 지지하기 위해 장애포괄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개인 특히, 고위 관리자급 개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식별하여 육성한다.

A4.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을 늘린다.

A5. 고등교육 기관 특히,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장애포괄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 및 기업가 장애포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B. 상거래 및 산업 주무 부처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인큐베이션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을 증진한다.

---

<sup>88</sup> 마찬가지로 UN과 기타 국제/지역 발전 파트너는 지역 차원에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민간 기업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에 모범사례 및 논의 사항을 교환하여 장애포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신감을 높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ILO글로벌 비즈니스 및 장애 네트워크(Global Business and Disability Network), Valuable 500 및 Workability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다.

<sup>89</sup> 장애포괄을 위한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조치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 Disability: IN 및 미국장애인협회에서 시작한 장애균등지수로 개발한 도구를 참조할 수 있다([www.disabilityin.org/resources/](http://www.disabilityin.org/resources/)).



그러한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을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둘 다에서 더 널리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있다.

- C. 교육과 기술 및 직업 교육 담당 부처에서는 기업, 비즈니스 협회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과 소통하여 장애인이 습득한 기술이 현재 노동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 D. 고용 담당 부처에서는 장애인이 기술 향상 및 기술 재교육 기회를 얻고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서비스 및 기타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sup>90</sup>
- E. 장애 주무 부처는 채용 담당 부처와 협력하여 노동 시장의 수요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장애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채용 기회에 관한 모범사례를 선도하는 기업과 혁신적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 장애인을 위한 실제적인 채용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 허브를 개발한다.<sup>91</sup>
- F. 각각의 관련 부처에서는 조달 담당자 및 조달 입찰자에게 장애포괄적 공공 조달에 관한 교육 및 후속조치 지침을 제공한다.<sup>92</sup>

#### IV. 우선 이행 영역 4에 대한 참조 목록

1. Disability: IN 및 미국장애인협회, '리소스 라이브러리'. 자료 참조 위치: [www.disabilityin.org/resources/](http://www.disabilityin.org/resources/)
2. ESCAP, *Disability at A Glance 2021: the shaping of disability-inclusive employment in Asia and the Pacific*(한 눈에 보는 장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포괄적 채용의 양상)(2021년 방콕). 자료 참조 위치: [www.unescap.org/kp/2021/disability-glance-2021-shaping-disability-inclusive-employment-asia-and-pacific](http://www.unescap.org/kp/2021/disability-glance-2021-shaping-disability-inclusive-employment-asia-and-pacific)
3. Our Ability, 'Creating generative AI to build an accessible world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생성형 AI 만들기)'. 자료 참조 위치: [www.ourability.com](http://www.ourability.com)

#### 5.2.5 우선 이행 영역 5: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 장려

##### 자카르타 선언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을 장려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i)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및 장애노인을 포함하도록 주류 및 장애별 사회 보호 제도 확장, (ii) 인적 자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 정책, 프로그램 및 투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아동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제공, (iii) 장애가 있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지속적인 통합교육 보장 및 (iv) 나이든 장애여성을 포함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sup>90</sup> 직무지도원 및 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침 및 모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SCAP, *Disability at A Glance 2021: the shaping of disability-inclusive employment in Asia and the Pacific*(한 눈에 보는 장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포괄적 채용의 양상)(2021년 방콕)을 참조하십시오.

<sup>91</sup> 예를 들어, Our Ability는 고용주 및 장애인 구직자 둘 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리소스 허브이다. 기술을 갖춘 장애인을 일자리와 연결시키고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인 Jobs Ability를 실행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접근성 등과 같은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ourability.com/](http://www.ourability.com/)을 참조하십시오.

<sup>92</sup> 입찰자에게는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 설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장애와 맞물려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과 비전염성 질병이 포함된다. 여성과 소녀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대부분의 돌봄 책임을 떠안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재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이어지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담 아래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이 이미 직면한 장애물의 영향을 악화시킨다.

## 생애주기적 관점

장애포괄에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여러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장애포괄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법은 장애 여성 및 남성, 소녀 및 소년이 생애의 각 단계에서 각자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고유한 문제 및 필요를 인정한다.

장애인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개입 및 지원이 있다. 여기에는 유아기에 감지 및 개입, 사회적 보호, 통합교육, 재활과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비롯한 의료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평생 건강 및 행복의 토대는 어린이 인생에 중요한 처음 몇 년 동안 형성된다. 다양한 시간과 여러 아동 집단에 걸쳐 유아기 발달을 측정하면 정책 입안자가 아동의 발달 진행 과정에 대한 장애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발달 잠재성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이 가장 큰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개입을 마련하는 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sup>93</sup>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포괄하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기본적이다.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타 지원 서비스,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적 보호는 빈곤 감소 및 예방, 불평등 완화, 전 생애주기에서 충격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상황과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시스템 및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sup>94</sup>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개별 학생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식 및 비공식 교육 환경에서 문화, 정책 및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DL)<sup>95</sup>은 효율적인 교육 프레임워크로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차별화된 학습 방법을 적용하면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sup>93</sup> 세계보건기구, 'WHO rolls out new holistic way to measure early childhood development(WHO, 유아기 발달을 측정하는 새로운 전체적인 방법 발표)'. 자료 참조 위치: [www.who.int/news/item/27-02-2023-who-rolls-out-new-holistic-way-to-measure-early-childhood-development](http://www.who.int/news/item/27-02-2023-who-rolls-out-new-holistic-way-to-measure-early-childhood-development).

<sup>94</sup> ESCAP, *How to Design Disability-Inclusive Social Protection, Social Development Policy Guides(장애포괄적 사회 보고, 사회개발 정책 설계 방법 가이드)*(2021년 방콕).

<sup>95</sup>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DL)은 모든 학생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 접근법이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학생의 강점과 필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구축한다.

교육 시스템이 교육을 표준화하려는 모델에서 벗어날 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의 학습 결과가 개선되고 학생의 학습 동기가 증가한다.<sup>96</sup>

이 우선 이행 영역에서 제안된 조치가 전부가 아니며 투자 및 기타 개입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다루지는 못한다. 이 섹션에서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노년기 포함)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장애인이 성별을 인지하고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권리 및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단계를 제시한다. 제안된 조치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생의 단계에 따라 분류되지만 일부 조치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성별 관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서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취약성과 소외를 악화시키는 지속적인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장애출현을 연구에 따르면 장애출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높고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sup>97</sup> 생애주기가 흘러감에 따라 취약성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up>98</sup>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한 상태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 전반에서 장애 여성 및 소녀는 일반 여성 및 소녀에 비해 몇 가지 형태의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았다. 동시에 이들은 가족, 간병인, 친밀한 파트너 및 제도적 시설에 의해 지속되는 독특한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다.<sup>99</sup> 또한 성 및 생식 건강을 관리할 권리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 당할 가능성도 높다.<sup>100</sup>

장애 여성 및 소녀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를 옹호하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애 여성 및 소녀는 요청 시 지원을 받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들의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한다.

본 운영 가이드 5.1.5. **성 인지적 생애주기 접근법**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성별 및 장애를 주류화하는 전반적인 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중요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6가지 각각의 우선 이행 영역에서 본 가이드는 교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이행 영역 5에서 본 가이드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대해 제안된 조치에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주류화한다. 한편, 장애 여성 및 소녀의 특히 높은 위험과 필요한 솔루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성별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 및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단독 조치 목록이 작성되었다.

<sup>96</sup> UNICEF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nd Accessible Digital Textbooks

- Find out what ADT is and how it can transform education(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 ADT란 무엇이며 ADT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기). 자료 참조 위치: [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http://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 .

<sup>97</sup> 세계보건기구, *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22년 제네바).

<sup>98</sup> 이러한 취약성에는 교육, 기술 발전 및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보조금, 상속, 유급 노동 및 기업을 정신의 부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up>99</sup> 유엔인구기금, *Wom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for Providing Rights-Based and Gender-Responsive Service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장애 여성 및 청년: 성별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 기반 및 성 인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2018년 뉴욕).

<sup>100</sup> Ibid.

## 주요 조치

2023~2032년 각국 정부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 유아기

- A. 보건 부처에서는 교육, 장애 아동 및 사회적 보호 담당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음을 비롯한 조치를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유아기 감지 및 개입 서비스 강화를 주도한다.
- A1. 다음을 비롯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조기 개입 및 생애주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태도로 유아기에 장애를 선별하는<sup>101</sup> 국가 프로그램을 확립/강화한다.
    - (a) 정기적인 신생아 선별 검사 및 특정 연령에 발달 선별 검사<sup>102</sup>
    - (b) 특정한 발달 장애를 식별하기 위해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유능한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자격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하게 의뢰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유지관리<sup>103</sup>
    - (c) 저소득 가구에 모든 선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검사가 언어 및 문화적으로 적절인지 확인
  - A2. 소외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적 발전 계획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1차 의료, 모자 건강 및/또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감지 및 개입 등과 같은 유아기 감지 및 개입을 국가 전략, 행동 계획 및/또는 프로그램에 통합한다.<sup>104</sup>
  - A3. 1차 의료, 재활 및 공동체 관련 정책에서 유아기 장애의 감지 및 개입에 관한 요건을 비롯하여 공동체 기반 재활에 관한 요건을 확립하여 관련 인력 수 및 필요한 교육을 지정한다.
  - A4. 건강, 복지 및 공동체 발전 담당 부처에서는 양질의 유아기 감지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탄탄한 시스템을 개발/강화한다.

<sup>101</sup> 선별의 목적은 조기 치료 및 개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구 중 건강 문제 또는 상태가 더 위험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는 선별된 개인 중 일부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별은 조기 진단과 다르다. 선별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반면에 조기 진단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태를 가급적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Screening programmes: a short guide(심사 프로그램: 요약 가이드)*(2020년 제네바)를 참조하십시오.

<sup>102</sup> 자세한 지침은 세계보건기구, *Global Scales for Early Development(GSED) v1.0 Package for measurement of child development under 36 months at population level(인구 수준에서 36개월 미만 유아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Global Scales for Early Development(GSED) v1.0 패키지)*(Geneva, 2023년 제네바)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자료 위치: [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SD-GSED-package-v1.0-2023.1](http://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SD-GSED-package-v1.0-2023.1).

<sup>103</sup> 발달 장애는 일반적으로 발달 지연이나 특히 학습, 언어, 의사소통, 인지, 행동, 사회화 또는 이동성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상태이다(예: 자폐증 또는 난독증).

<sup>104</sup> 정부는 장애인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에 발달 경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기 감지 및 개입 서비스는 아동 발달 경로의 '표준화'를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발달 필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공되어야 한다.

- A5. 모든 수준에서 유아기 감지 및 개입과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간에 효율적인 케이스 의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별된 장애 아동 및 그 가족에게 현금 및 기타 사회적 보호 혜택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A6. 여러 부처 간에 정기적으로 자주 소통 및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건강, 아동 및 가족 복지 담당 관련 부처의 주류 서비스에 유아기 감지 및 개입 서비스를 통합한다.
- B. 출생 신고 담당 부처에서는 출생 신고는 장애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인식하고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 아동 특히, 농촌,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 및/또는 저소득층에 거주하는 아동, 소녀, 엄마의 학력이 낮은 아동이 출생 직후 바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제공한다.<sup>105</sup>
- C. 건강 및 교육 담당 부처에서는 협력을 통해 아직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5세 장애 아동 또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5세 이상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취학 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 D.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서는 다음을 통해 유아기 개입 서비스의 가용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D1. 해당 서비스의 공공 제공 늘리기
  - D2. 시민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 지원
  - D3. 민간 서비스 비용의 상한선 지정
  - D4.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수단 권장
  - D5. 농촌,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 및/또는 저소득 계층에게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산화
- E. 지방 정부는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기 감지 및 개입에 대한 부모 및 공동체 의료계 종사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공동체 기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시민사회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한다.

## II. 청소년 및 청년기

<sup>105</sup> 유엔아동기금, *Seen, Counted, Included: Using data to shed light on the well-being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보이고 계산되고 포함되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 아동의 웰빙에 관심을 갖기)(2021년 뉴욕).



- A. 교육부에서는 모든 수준<sup>107</sup>에서 구체적인 목표 및 일정에 따라 장애 통합 교육<sup>106</sup>의 시스템 전반 성장을 위한 입법, 정책 및 국가 전략을 개발 및 강화하고 다음을 비롯한 조치를 취한다.
- A1. 장애가 있는 모든 학습자를 위해 장애 통합 교육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통합 교육 학급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특수 교육 학급을 모든 수준에서 개혁한다. 없는 경우 통합 교육 학급을 만든다.
  - A2. '완전수용(zero-rejection)' 정책을 채택하여 장애 아동이 평등하게 학교 교육에 접근하도록 한다.
  - A3. 교육 관행, 공간 및 자료<sup>109</sup>(기술 및 직업 교육 포함)에서 실제로 장애를 포괄하도록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행<sup>108</sup>을 도입한다.
  - A4. 모든 수준의 교사(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 강사 포함)를 위한 교육 과정, 교사를 위한 실습 교육과 교육 분야의 고등 교육에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합하여 장애통합교육 구현을 위한 도구로 교육자를 준비시킨다.
  - A5. 장애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가 있는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교사, 보조 교사<sup>110</sup> 및 자원 인력<sup>111</sup>을 충분히 확보한다.
  - A6. 지속적인 교육, 취업 교육, 고용, 독립적인 생활, 일상적인 기술, 공동체 및 관계에 참여, 지원 서비스에 접근 등을 지원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필수 구성요소로 장애가 있는 학습자 및 기타 모든 학습자를 위한 개별 교육 계획<sup>112</sup>(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 계획 포함)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sup>106</sup> CRPD/C/GC/4, para. 9-12을 참조하십시오.

<sup>107</sup> CRPD/C/GC/4, para. 8. 여기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기술 및 직업 교육, 평생 학습과 과외 활동 및 사회 활동이 포함된다.

<sup>108</sup>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프레임워크([www.cast.org/impact/universal-design-for-learning-udl](http://www.cast.org/impact/universal-design-for-learning-udl)) 및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버전 2.2)([udlguidelines.cast.org](http://udlguidelines.cast.org))을 참조하십시오.

<sup>109</sup> 장애 아동 및 장애가 있는 학습자와 관련하여 이는 단순히 주류 정규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벗어나 정당한 편의 및 장애물이 없는 교육 환경으로 강화되는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110</sup> 그림자 도우미, 보조 교사, 그림자 교사 또는 특수 필요 보조 교사라고도 한다. 보조 교사의 역할은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사회, 교육 및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여 학급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 교사 및 기타 자원 인력과 소통한다. 자세한 내용은 UNESCO, *The use of teacher assistants and education support personnel in inclusive education*(*통합교육에 보조교사와 교육지원 인력 활용*), (2022년 파리)을 참조한다.

<sup>111</sup> 예를 들어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교육 심리학자, 교육 상담사 등이 있다.

<sup>112</sup> 자세한 내용은 UNICE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nd Accessible Digital Textbooks(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http://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 및 UNESCO, *School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in school infrastructure*(*학교 접근성과 학교 인프라의 유니버설디자인*)(2020년 파리)([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56](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56))를 참조하십시오.

- A7. 점진적으로 학급의 크기를 줄이고 각 학급에는 적절한 수의 교사를 배치해 다양한 학습 필요를 가진 학습자를 비롯해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A8.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교육자가 장애 아동의 부모, 보건 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도록 촉구한다.<sup>113</sup>
  - A9. 학교, 교장, 교감 및 선임 교사의 성과 평가에 인센티브와 연계된 핵심 성과 지표로서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은 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주류 학급 등록 및 이수를 명시한다.
  - A10. 지방 정부의 교육청에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통합교육의 중요성과 모든 학생이 누릴 이점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A11. 장애통합교육에서 디지털 및 보조기술의 발전 및 사용에 투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한다.
- B. 교육 및 채용 담당 부처는 장애통합교육 및 취업 지원에 전문화된 시민사회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교사, 학부모, 보조 교사, 치료사, 직무지도원,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및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동료 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을 공동으로 촉진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B1. 장애통합교육 및 취업 전 기술 교육 시 취업, 자영업 및 창업에 탄탄한 토대가 될 학습 성공에 중점을 둔다.
    - B2. 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학교-업무 현장 전환에 대한 국내 모범사례 모음을 만들어 늘려나간다.
  - C. 교육 및 고용 부처에서는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용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학교-업무 현장 전환 및 취업 유지 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환 및 포괄적 고용에 대한 직무지도원 서비스<sup>114</sup>를 확립/강화한다.
  - D. 사회적 보호 담당 부처에서는 장애 청소년 및 청년 특히, 장애 소녀와 농촌,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장애 혜택 이외에 맞춤형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sup>113</sup> 여기에는 개별 교육 계획에 대한 협력, 아이디어 경청 및 수락과 장애 아동의 학습 성공을 위한 가족의 지원이 포함된다.

<sup>114</sup> 직무지도원은 지원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직장까지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직장에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고용주가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직무지도원은 장애 직원 및 직장의 구체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을 맞춤화해 장애인, 근무 환경 및 고용주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무지도원 서비스는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자폐를 앓고 있는 직원을 지원할 때 특히 유용하다.

저소득층 및 기타 취약한 환경의 사람들이 장애 포괄 교육, 건강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활성화한다.

- E. 보건 부처는 모든 수준의 청소년 건강 전략 및 프로그램에 장애포괄적, 성 인지적 건강, 특히 장애 소녀를 위한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통합한다.

### III. 성인기(고령기 포함)

정부 기관장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부처 및 부문 간 조정 위원회는 공동체 내에서 양질의 독립된 삶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및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아래 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치를 동원한다.

- A. 장애인 및 그 돌봄 파트너에게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보호 혜택을 통해 장애인에게 보편적 보장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 B. 사회적 보호 담당 부처는 장애 여성 및 노인과 농촌,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또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장애 유형 및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보장 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주류 및 장애 관련 사회적 보호 체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검토하여 개혁한다.
- C. 장애 담당 부처는 보건 부처와 협력하여 기능성 평가에 대한 최신 국제 표준에 맞춰 기능적 어려움과 지원 필요<sup>115</sup>를 측정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장애 평가 방법론을 업데이트한다.<sup>116</sup>
- D. 장애 주무 부처는 보건 부처 및 전문 연구/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기능 평가 도구 및 기술의 사용에 관해 공동체 기반/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E. 복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소외된 환경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부처/부서 간 협력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참여시킨다.
- F. 사회적 보호 담당 부처는 자격 평가 및 사례 평가에 관여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 및 성 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sup>117</sup>

<sup>115</sup> CRPD의 정신 및 원칙에 따라 장애 평가 시 용어의 사용은 (의학적 편견에 따라) 손상의 심각도(예: 중증, 중등도 또는 경미한 장애)나 '저기능' 및 '고기능'을 언급하는 용어에서 필요를 설명하는 용어(예: 지원 필요가 높음, 중간 또는 낮음)로 바뀌고 있다.

<sup>116</sup> 이러한 평가 도구의 예는 [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http://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에서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참조하십시오.

<sup>117</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8조를 참조하십시오.

- G. 사회 보호, 재활, 의료, 교육 및 고용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은 통합된 정보를 관리하고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혜택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사례 관리 및 의뢰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H. 보건, 복지, 사회적 보호, 교육 및 고용 담당 부처는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생애 과정에서 장애인 개인에 맞춘 지원 계획을 도입한다.
- I. 장애 주무 부처는 복지, 사회적 보호, 보건 및 교육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I1. 시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하여 중복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양질의 보조기구를 제공한다.
  - I2. 다양한 장애인 집단에 대한 실시간 지원<sup>118</sup> 제공을 필수 서비스로 포함하고 실시간 지원 인력 및 간병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원칙<sup>119</sup>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 J. 사회적 보호 및 보건 담당 부처에서는 유급 및 무급 돌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여성(나이든 여성 및 소녀 포함)을 고려하여 치매환자,<sup>120</sup> 장애 노인, 중복장애인 및 장기 돌봄 필요가 있는 기타 장애인 및 그 돌봄 파트너를 위한 장기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협력한다.

#### IV. 젠더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 및 권리 해결

아래에서 제안하는 조치는 장애 여성 및 소녀와 관련된 성별 기반 폭력, 성 및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측면을 제시한다.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장애통합에 관한 포괄적이고 자세한 지침을 얻기 위해 정부 및 기타 활동 주체는 젠더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 및 권리 해결을 위해 권리 기반 성 인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UNFPA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sup>121</sup>

<sup>118</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를 참조하십시오. 동등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에는 근로지원, 촉진 및 지침이 포함된다.

<sup>119</sup> '양질의 일자리' 원칙에는 생산적인 고용 기회,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사회적 보호 그리고 개인적 발전과 사회 통합,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전망을 제공하는 사회적 대화가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ilo.org/global/topics/decent-work/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topics/decent-work/lang--en/index.htm)을 참조하십시오.

<sup>120</sup> 여기에는 초로기 치매 및 소아 치매 환자가 포함될 수 있다.

<sup>121</sup> 유엔연구기금, *Wom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for Providing Rights-Based and Gender-Responsive Service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장애 여성 및 청년: 성별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 기반 및 성 인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2018년 뉴욕).

- A. 특히 다음 조치를 통해 성별 기반 폭력<sup>122</sup>에 관한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장애포괄을 주류화한다.<sup>123</sup>
- A1.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 및 정책 틀을 채택하여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별 기반 형사 범죄로 적절하게 정의한다.
  - A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법률, 정책 및 전략 기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성별 기반 폭력과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A3. 다양성을 지닌 장애 여성 및 소녀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의 높은 위험과 그 보이지 않는 특성에 대해 정책 입안자, 응급 구조원,<sup>124</sup> 서비스 제공자 및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 A4.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의 위험 및 발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응급 구조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 A5. 성별 기반 폭력 생존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 패키지<sup>125</sup>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A6. 경찰, 의료, 쉼터, 사회적 지원 및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인력을 대상으로 성별 및 장애 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A7. 법적 능력이 철회되거나 제한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애 여성 및 소녀가 차별 없이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 A8.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사례를 식별한다.

<sup>122</sup> 젠더 기반 폭력에는 공공 또는 사적 공간에서 가해지는 성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위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폭력, 강압 및 조종도 포함된다. 이러한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성폭력, 조혼, 여성 할례 및 소위 '명예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별 기반 폭력의 결과는 끔찍하며 생존자에게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unhcr.org/what-we-do/protect-human-rights/protection/gender-based-violence](http://www.unhcr.org/what-we-do/protect-human-rights/protection/gender-based-violence)를 참조하십시오.

<sup>123</sup>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 Gerard Quinn이 공동으로 승인한 성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참조 위치: [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wp-content/uploads/sites/15/2021/12/CRPD-Statement-25\\_11\\_2021-End-violence-against-Women-1.pdf](http://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wp-content/uploads/sites/15/2021/12/CRPD-Statement-25_11_2021-End-violence-against-Women-1.pdf).

<sup>124</sup> 응급 구조원에는 일반적으로 경찰, 의료 인력 및 가족이 포함된다.

<sup>125</sup> 필수 서비스 패키지는 의료, 사회적 서비스, 경찰 및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서비스는 최소한 성별 기반 폭력을 당한 여성 또는 소녀의 권리, 안전 및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연구기금 *Essential Services Package for Women and Girls Subject to Violence(폭력을 당한 여성 및 소녀를 위한 필수 서비스 패키지)*(2015년 뉴욕)를 참조하십시오.



- B.** 보건/복지/여성/장애 담당 부처는 장애 여성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장애인을 위한 건강 형평성과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단체와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음을 비롯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성 인지적 및 장애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B1.**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없애므로써 장애 여성과 소녀를 권리 보유자로 인정한다.
- B2.**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과 함께 건강검진 및 치료 시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B3.** 특히,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선택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 및 소녀(나이드는 장애 여성 포함)의 자기 결정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 B4.** 다음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a)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및 표현으로 작성된 건강 관련 정보
  - (b) 결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여성 및 소녀의 필요를 충족하는 자원과 편의 시설을 갖춘 장애포괄적이고 권리에 기반하며 성 인지적인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

#### V. 우선 이행 영역 5에 대한 참조 목록

1. 세계보건기구, 'WHO rolls out new holistic way to measure early childhood development(WHO, 유아기 발달을 측정하는 새로운 전체적인 방법 발표)'. 자료 참조 위치: [www.who.int/news/item/27-02-2023-who-rolls-out-new-holistic-way-to-measure-early-childhood-development](http://www.who.int/news/item/27-02-2023-who-rolls-out-new-holistic-way-to-measure-early-childhood-development)
2. 세계보건기구, *Global Scales for Early Development (GSED) v1.0 Package for measurement of child development under 36 months at population level( 인구 수준에서 36개월 미만 유아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Global Scales for Early Development(GSED) v1.0 패키지)*(2023년 제네바). 참조 자료 위치: [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SD-GSED-package-v1.0-2023.1](http://www.who.int/publications/i/item/WHO-MSD-GSED-package-v1.0-2023.1)
3. 세계보건기구, *Screening programmes: a short guide( 심사 프로그램: 요약 가이드)*(2020 제네바). 참조 자료 위치: [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0829/9789289054782-eng.pdf](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0829/9789289054782-eng.pdf)
4. CAST 'About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참조 자료 위치: [www.cast.org/impact/universal-design-for-learning-udl](http://www.cast.org/impact/universal-design-for-learning-udl)
5. CAST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Guidelines(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참조 자료 위치: [udlguidelines.cast.org](http://udlguidelines.cast.org)
6. UNICE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nd Accessible Digital Textbooks(학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참조 자료 위치: [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http://www.unicef.org/lac/en/universal-design-learning-and-accessible-digital-textbooks)
7.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School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in School Infrastructure( 학교 접근성과 학교 인프라의 유니버설디자인)*(2020년 파리). 참조 자료 위치: [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56](http://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56)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The use of teacher assistants and education support personnel in inclusive education ( 통합교육에서 보조 교사 및 교육 지원 담당자 활용)*(2022년 파리), 참조 자료 위치: [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92](http://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692)



9. 세계보건기구,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ICF)'. 참조 자료 위치: [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http://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
10. ESCAP, *How to Design Disability-Inclusive Social Protection, Social Development Policy Guides*(장애포괄적 사회 보고, 사회개발 정책 설계 방법 가이드)(2021년 방콕). 참조 자료 위치: [www.unescap.org/kp/2021/how-design-disability-inclusive-social-protection](http://www.unescap.org/kp/2021/how-design-disability-inclusive-social-protection)
11. 유엔인구기금, *Wom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for Providing Rights-Based and Gender-Responsive Service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장애 여성 및 청년: 성별 기반 폭력과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 기반 및 성 인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2018년 뉴욕). 참조 자료 위치: [womenenabled.org/wp-content/uploads/2021/02/WEI-and-UNFPA-Guidelines-Disability-GBV-SRHR-English.pdf](http://womenenabled.org/wp-content/uploads/2021/02/WEI-and-UNFPA-Guidelines-Disability-GBV-SRHR-English.pdf)
12. 유엔인구기금 *Essential Services Package for Women and Girls Subject to Violence*(폭력을 당한 여성 및 소녀를 위한 필수 서비스 패키지)(2015년 뉴욕) 참조 자료 위치: [www.unfpa.org/essential-services-package-women-and-girls-subject-violence](http://www.unfpa.org/essential-services-package-women-and-girls-subject-violence)

### 5.2.6 우선 이행 영역 6: 장애 데이터 격차 해소 및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역량 강화

#### 자카르타 선언

승인된 국가 기관 및 기타 인정된 출처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정책 입안,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전략을 알리기 위해 여러 부문 간에 성별, 나이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교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2030 의제와 기타 글로벌 및 지역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수행한 자발적 국가 평가에 장애포괄적 개발 달성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함으로써 적절하게 장애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장애포괄적 개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설명

장애, 성별, 연령별로 분류되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통계 및 행정 데이터는 증거 기반 정책 및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며, 장애포괄적 발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다양한 장애인 그룹을 살펴보고 집계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집계가 된다는 것은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한 소지자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정부의 장애 식별 카드/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양질의 장애 데이터 및 통계를 생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sup>126</sup> 이는 장애인 권리의 실현 과정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적하는 데 위험이 된다.

장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애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4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인 장애 매핑:** 모든 발전 부문에 걸쳐 장애포괄적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기 위해 인구 집단의 장애 정도와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 및 배제를 이해하기 위해<sup>127</sup>

<sup>126</sup> '데이터'라는 용어는 통계를 생성하는 바탕이 되는 원시 정보를 나타낸다. '통계'는 데이터의 해석 및 요약을 제공한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ata and statistics?(데이터와 통계의 차이)'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자료 위치: [libguides.lib.msu.edu/datastats](http://libguides.lib.msu.edu/datastats).

<sup>127</sup>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성의 주요 수혜자를 식별함으로써 도시 개발, 디지털화, 주택 및 대중교통 계획을 알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혜택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 2) **장애 평등 타계탕:** 다음과 같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 (a) 장애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고충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
  - (b) 다양한 범위의 혜택 및 공공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c)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교차하는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더 넓은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
- 3) **참여 평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 상태별로 인구 데이터를 분류하면 비장애 동료와 비교하여 장애인에 대한 중요한 지표(예: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 4) **장벽 평가:** 삶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식별하여 장벽이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권리 실현 및 참여를 방해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sup>128</sup>은 출현율 및 배제를 측정하여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는 장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고안했다. 이러한 질문 세트는 개념 프레임워크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ICF)를 사용했다.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질문 세트는 장애 진단, 프로그램/혜택에 대한 개별 수혜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제공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sup>129</sup> 이러한 기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개인 수준에서 상세한 전문 평가가 필요하다.

진행 상황을 더욱 일관되게 추적하려면 정부가 CRPD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를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관한 보고 절차, 아동권리협약(CRC),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자발적 국가 평가(VNR) 등 기타 인권 조약 및 글로벌 발전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관한 보고와 연결해야 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뛰어나고, 접근 가능하고,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장애,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관련 특성별로 분류된 증거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CRPD 진행 상황 추적 및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이 우선 이행 영역에서는 장애 관련 통계 및 장애포괄적 진행 상황 추적 실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및 통계는 자선 및 복지 중심 접근법에서 다양한 장애인의 삶과 기회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증거를 생성한다.

## 주요 조치

2023~2032년 각국 정부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한다.

<sup>128</sup> 워싱턴 그룹: 질문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자료 위치: [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question-sets/](http://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question-sets/).

<sup>129</sup> 워싱턴 그룹, *The Washington Group Primer* (2020년 하얏트빌).

## I. 법률적 조치 및 정책 개혁

- A. 통계청은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sup>130</sup> 다음에 관한 입안 및/또는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 A1.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애 통계 프레임워크<sup>131</sup>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전체 장애 매핑, 장애 평등 타게팅, 참여 평가 및 장벽 평가 목표를 이행하는 장애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 통계 생성한다.
  - A2.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기반으로 한 장애 질문을 가구 조사, 주제별 조사,<sup>132</sup> 표본 조사, 국가 인구 조사 등 각 부처/부서의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 주류화한다.
  - A3. 다음에 관한 격차, 과제 및 모범 사례를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종합 검토를 수행한다.
    - (a)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도구를 통해 장애 데이터를 조정한다는 자세로 장애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분석
    - (b) 장애 데이터 품질
    - (c) 다양한 출처의 장애 데이터 사용
    - (d) 장애 데이터 및 통계에 접근
  - A4. 장애인에 관한 통합 행정 데이터 및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sup>133</sup> 다양한 관련 부처 및 부서의 감독하에 다양한 수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한다.
  - A5.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원칙에 따라 데이터 수집, 해석 및 사용 과정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 구하기<sup>134</sup>
  - A6. CRPD와 관련하여 SDG의 VNR,<sup>135</sup> UPR에 대한 국가 보고서, CEDAW 및 CRC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와 MIPAA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장애 관련 지표와 장애 및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 포함

<sup>130</sup> 관련 부처에는 보건, 교육, 노동 및 고용, ICT, 국내 문제(국가 안보), 사회 발전, 산업, 도시 관리, 농촌 개발, 인구 및 성별 담당 부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sup>131</sup> 워싱턴 그룹: 질문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sup>132</sup> 이러한 조사에는 국가 건강 및 사망률 조사, 휴대폰 사용 조사 및 노동 인구 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up>133</sup> Disabil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DMIS)을 강화하기 위한 르완다의 노력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fileadmin/uploads/wg/WG\\_Annual\\_Meeting\\_-\\_DMIS\\_Rwanda\\_09.11.2021\\_-\\_copy\\_secretariat.pdf](http://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fileadmin/uploads/wg/WG_Annual_Meeting_-_DMIS_Rwanda_09.11.2021_-_copy_secretariat.pdf)를 참조하십시오.

<sup>134</sup> UN, *Data Privacy, Ethics and Protection: Guidance Note on Big Data for Achievement of the 2030 (개인정보 보호, 윤리 및 보호: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빅 데이터에 관한 지침)*(2017년 뉴욕). 참조 자료 위치: [unsdg.un.org/resources/data-privacy-ethics-and-protection-guidance-note-big-data-achievement-2030-agenda](https://unsdg.un.org/resources/data-privacy-ethics-and-protection-guidance-note-big-data-achievement-2030-agenda).

<sup>135</sup> A/RES/70/1을 참조하십시오. 자발적 국가 평가 준비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엔 경제사회국 *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자발적 국가 평가 준비 핸드북)*(2022년 뉴욕)를 참조하십시오.

- A7. 장애인이 여러 부문 특히 장애 관련 부문과 장애인의 상황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데이터 및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II. 제도적 방법

- A. 통계청은 장애 주무 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수준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부처 및 부문 간 기구를 설립한다.
  - A1. 증거 기반 정책 입안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지 및 보호하며 장애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상태에 대한 데이터의 정기적인 수집을 보장한다.
  - A2.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서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장애 정보 시스템(장애 식별 카드 소유자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개발한다.
  - A3. 기능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자체 사무소/구청에 스스로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신청 및 등록 수단이 유연하고 장애인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한 등록 과정을 확립한다.<sup>136</sup>
  - A4. 통계청은 정기적인 국가 통계 데이터 수집에 장애 관련 질문 세트를 통합하고, 장애를 기준으로 분류된 행정 데이터 수집에 관해 관련 부처를 안내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 통계 생성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술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A5. 장애 주무 부처는 장애 데이터 수집, 분석, 배포 및 사용에 관해 조언할 때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 A6. 모든 관련 부처/부서는 모든 수준에서 장애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결과물 배포를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창구를 지명한다.
  - A7. 모든 수준의 관련 부처/부서는 장애인이 장애 데이터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한다.<sup>137</sup>
  - A8. 장애 주무 부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UPR, CEDAW, CRC, MIPAA 및 기타 글로벌/지역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에 대한 국가/지방별 자발적 검토를 조정하는 핵심 기관/부서와 협력하여

<sup>136</sup> Save the Children Nepal, *An Innovative Model for Disability Screening and Issuing Disability Identity Card: A Study Report 2022*(장애 심사 및 장애 신분증 발급을 위한 혁신 모델: 2022년 연구 보고서)(2022년 카트만두).

<sup>137</sup> 데이터수집 시 장애인은 인터뷰 대상 이외의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장려하기 위해 열거자, 기술 고문 및 공동체 중재자 등과 같은 역할을 맡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비롯한 조치를 통해 관련 검토 프로세스 및 보고서에 장애포괄이 표준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 (a) 기술 조안을 제공하고 검토 프로세스의 전체 주기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 (b) 장애인이 다양한 국가 및 지방별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이 예산을 책정하고,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A9.** 주무 기관/부서는 국가/지방별 검토를 조정하고 수어, Easy Read 형태<sup>138</sup> 및 음성 형태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각 보고서를 작성한다.

### III. 역량 발전

- A.** 통계청에서는 장애, 연령 및 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Washington Group Short Set on Functioning(워싱턴 그룹 장애 상태 측정 도구), 워싱턴 그룹/UNICEF 아동 기능 모듈 및 기타 질문 세트와 장애 감수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B.** 통계청은 정책입안자 및 모든 수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연령 및 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결과물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C.** 장애 주무 부처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 및 집단 특히, 빈곤층 및/또는 외딴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데이터 수집 및 장애 통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 D.** 장애 주무 부처는 국가 및 지방별 검토를 조정하는 핵심 기관/부서와 협력하여 모든 수준에서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체 및 집단이 데이터 및 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E.** 통계청, 장애 주무 부처와 국가/지방별 검토를 조정하는 핵심 기관/부서는 매스컴과 협력하여 최신 장애 데이터 및 통계를 대중에게 배포한다.

### IV. 우선 이행 영역 6에 대한 참조 목록

- 1. 영국 정부, 장애지원처(Office for Disability Issues), *Making written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 정보 만들기)*(2010년 런던). 참조 자료 위치: [odi.dwp.gov.uk/docs/iod/easy-read-guidance.pdf](http://odi.dwp.gov.uk/docs/iod/easy-read-guidance.pdf)

---

<sup>138</sup> Easy Read 문서의 주요 용도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Easy Read는 것은 기존의 문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Easy Read 버전은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핵심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서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 장애지원처(Office for Disability Issues), *Making written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 정보 만들기)*(2010년 런던).



2. Save the Children Nepal, *An Innovative Model for Disability Screening and Issuing Disability Identity Card: A Study Report 2022*(장애 심사 및 장애 신분증 발급을 위한 혁신 모델: 2022년 연구 보고서)(2022년 카트만두). 참조 자료 위치: [www.unicef.org/nepal/reports/innovative-model-disability-screening-and-issuing-disability-id-cards](http://www.unicef.org/nepal/reports/innovative-model-disability-screening-and-issuing-disability-id-cards)
3. 유엔 경제사회국 *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자발적 국가 평가 준비 핸드북)(2022년 뉴욕)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자료 위치: [sdgintegration.undp.org/handbook-preparation-voluntary-national-reviews](http://sdgintegration.undp.org/handbook-preparation-voluntary-national-reviews)
4. UN, *Data Privacy, Ethics and Protection: Guidance Note on Big Data for Achievement of the 2030* (개인정보 보호, 윤리 및 보호: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빅 데이터에 관한 지침)(2017년 뉴욕). 참조 자료 위치: [unsdg.un.org/resources/data-privacy-ethics-and-protection-guidance-note-big-data-achievement-2030-agenda](http://unsdg.un.org/resources/data-privacy-ethics-and-protection-guidance-note-big-data-achievement-2030-agenda)
5. 워싱턴 그룹, '질문 세트' 참조 자료 위치: [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question-sets/](http://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question-sets/)
6. 워싱턴 그룹, *The Washington Group Primer* (2020년 하이어츠빌). 참조 자료 위치: [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about/the-washington-group-primer/](http://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about/the-washington-group-primer/)

### 5.3 모든 우선 이행 영역의 주요 활동 주체 및 파트너

이행해 나가려면 범정부 및 범사회적 급증을 구축하기 위해 활발한 리더십과 장애포괄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활동 주체가 특정한 조치를 주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조치에는 여러 부처 및 부문 간 협력이 중요하다. 다음 주요 활동 주체 및 파트너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

- A.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 B. 모든 수준의 입법 기관(중앙/주/지구/지역 기관)
- C. 국가 조정 기관/장애 주무 부처
- D. 모든 관련 부처 및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 E. 선거관리위원회 및 네트워크
- F. 다양한 장애인 단체, 네트워크 및 비공식 집단(모든 수준의 단체, 특히 옹호, 공공 정책 입안, 의사결정, 기후 행동, 평화 및 안보에 관여하는 단체)
- G. 노인 연합 및 네트워크
- H. 돌봄 파트너의 네트워크 및 비공식 집단
- I. 신앙 기반 단체
- J. 기타 시민사회단체, 특히 다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 (a)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b) 아동권리협약

- (c)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및 노인 학대로부터 노인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문제
- (d) 고충 처리 및 제도적 개혁
- (e) 건강한 노화, 건강 평등, 건강 증진
- (f) 주거, 대중교통, 공공시설 및 공간
- (g) 디지털 리터러시
- (h) 재난위험감소

**K.** 도시 계획자, 건축가, 엔지니어, 웹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원, 통계학자, 출판사,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언론인, 교육자, 의료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이에 국한되지 않음)

**L.** 민간 기관

**M.** 비즈니스 협회/상공회의소

**N.** 미디어 대행사

**O.** 국가인권기관

**P.** UN 기관 및 유엔 국가 팀


#### 5.4 기술적 지원 및 운영 가이드 이행 상태 추적

본 운영 가이드의 실현을 향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ESCAP 사무국은 UN 기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플랫폼<sup>139</sup> 및 이 지역의 유엔 국가 팀과 협력하여 다음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

- A.** ESCAP 회원 및 준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운영 지침에 자세히 설명된 6가지 우선 이행 분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B.** 다음과 같은 교차 분야에서 지식 생성 및 기술적 협력에 투자한다.
  - B1.** CRPD 및 마라케시 조약에 맞춰 국내법 조정 및 이행
  - B2.** 장애 데이터 수집 및 생성
  - B3.** 사회적 보호

<sup>139</su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UN 발전 시스템은 2020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지역 자산 활용 권고에 따라 2020년 10월 공식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플랫폼을 설립했다. 설립되자마자 즉시 운영되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고 코로나19에 대응을 비롯하여 지역별 공동 개입을 조정했다. 지역 협력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에 기반을 둔 연합체를 파악했고 이로 인해 중요한 우선 이행 영역 및 교차적 문제에 대한 UN의 지역별 대응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완화, (2) 회복력 구축, (3) 포괄 및 역량강화, (4) 인간의 이동성과 도시화, (5) 인권, 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UN, Regional Results Report of the UN System for Asia and the Pacific(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UN 시스템의 지역 결과 보고서)(2021).

- B4.**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성 표준 및 지침 준수
  - B5.**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저렴한 보조기술의 생산, 배포, 수리 및 유지관리
  - B6.** 장애포괄적 디지털화
  - B7.** 장애포괄적 비즈니스.
- C.** 필요에 따라 지역 차원의 UN 기구, 유엔 국가 팀 및 유엔 상주조정기구와 협력하여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VNR, SDG, UPR, CEDAW, CRC, MIPAA 및 기타 글로벌/지역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에 장애 관점을 통합한다.
  - C2.** 국가 차원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체제에 장애포괄을 주류화한다.
  - C3.**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VNR 및 기타 앞서 언급한 국가 보고 프로세스에 OPD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한다.
- D.** 다음을 비롯한 조치를 통해(이에 국한되지 않음) 자카르타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에 관한 실무 그룹을 강화한다.
- D1.** 정부와 OPD를 포함하는 멤버십을 확립한다.
  - D2.** 관련 UN 기관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옹저버로 참여시킨다.
  - D3.**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학습한 구현 교훈을 공유하고 동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범사례 플랫폼 커뮤니티 개발을 촉진한다.
- E.**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태평양 제도 포럼을 비롯하여 하위 지역별 정부 간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촉진 및 강화하여 하위 지역 차원에서 자카르타 선언의 효율적인 이행을 주도한다.
- F.**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2023~2032)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국가 및 하위 지역별 이벤트의 공동 개최를 촉진하고 제4차 지역별 장애인 10년의 지역별 캠페인의 기준으로 본 운영 가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 G.** 글로벌 장애인 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유엔 장애인 권리 파트너십(UNPRPD) 등과 같은 기존 플랫폼 및 기구를 활용하여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2023~2032)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범위와 깊이를 확장한다.

- H.** 장애포괄적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 행위 주체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거나 강화한다.
- I.** 2027년 중간 검토 및 2032년 정부간 최종 검토를 비롯하여 자카르타 선언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 진행 상황 평가를 실시한다.